

양산시민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소통



양산시의회
YANGSANCITYCOUNCIL

소통하는 열린의정 역동적인 희망양산

본격적인 인구 35만 시대를 맞아
양산시의회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민이 꿈꾸는 행복도시 양산, 내일이 기다려지는 희망도시 양산.
양산시의회는 다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시민에게 약속한 많은 일들을 하나 둘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실천으로
양산시의회는 시민행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더 큰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글 읽는 순서

CONTENTS

- 인사말 / 04
- 제7대 전반기 양산시의회 의원 / 05
-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 06
- 의원의 임무 및 역할 / 07
- 제7대 양산시의회 개원 / 08
- 2018년 하반기 의정활동 결산 / 10
- 2018년 행정사무감사 / 14
-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 22
- 2019년 당초예산 심의결과 / 24
-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결과 / 27
-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 결과 / 28
- 의원발의 조례 / 30
- 2018년도 하반기 의안심사 / 34
 - 제157회 임시회
 - 제158회 제1차 정례회
 - 제159회 제2차 정례회
- 5분 자유발언 / 73
- 시정질문 / 99
- 건의안 / 110
- 민원처리 현황 / 114
- 의정활동 역량강화 / 122
- 의정활동 이모조모 / 130
- 의회 청사배치도 / 134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출범한 제7대 양산시의회도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선거 출마를 결심하여 초선의원의 열정 그대로 지역의 일꾼으로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 뜻이 변치 않았는지,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3년여의 남은 7대 의회 임기 동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35만 양산시민이 주신 가장 고귀한 시의회의 책무임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50만의 중견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우리 양산은 많은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노포와 복정을 잇는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부산대학교와 연계한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의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굵직한 현안들이 목전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집행부와 협업과 소통,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17명의 의원들은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35만 시민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양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양산시의회 의장 서진부

“
양산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양산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제7대 전반기 양산시의회 의원

의장 단

Chairman & Vice chairman



의장 서진부
(서창·소주)



부의장 김효진
(물금·원동)

의회운영위원회

Council Steering Committee



위원장 박일배
(병산·덕계)



부위원장 박미해
(비례대표)



위원 김효진
(물금·원동)



위원 박재우
(상북·하북·강서)



위원 이장호
(서창·소주)

기획행정위원회

Planning & Administrative Committee



위원장 정석자
(동면·양주)



부위원장 김혜림
(물금·원동)



위원 김효진
(물금·원동)



위원 이종희
(상북·하북·강서)



위원 곽종포
(물금·원동)



위원 박재우
(상북·하북·강서)



위원 박미해
(비례대표)



위원 정숙남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City & Construction Committee



위원장 임정섭
(물금·원동)



부위원장 문신우
(중앙·삼정)



위원 박일배
(병산·덕계)



위원 이상정
(병산·덕계)



위원 이용식
(중앙·삼정)



위원 김태우
(동면·양주)



위원 최선호
(동면·양주)



위원 이장호
(서창·소주)

양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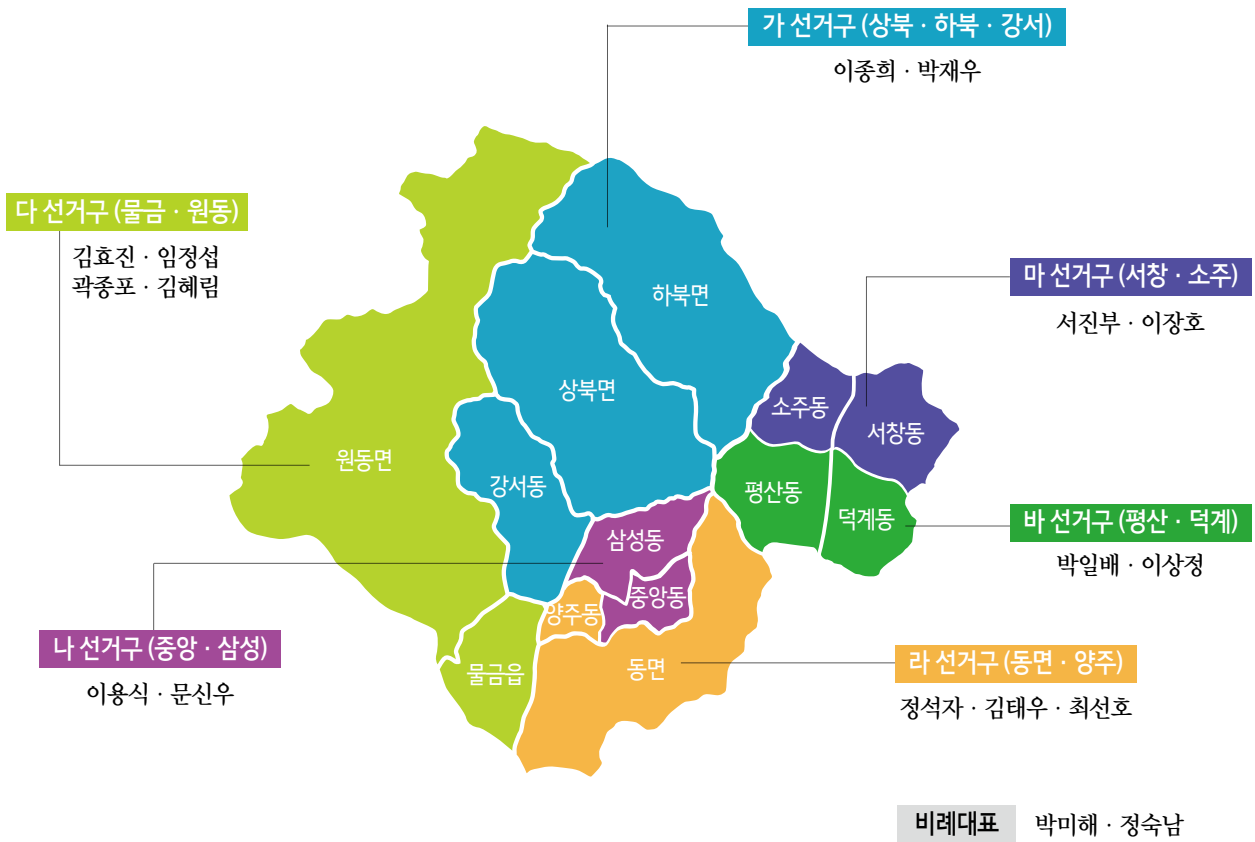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의 임무

-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의 역할

-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책결정자, 갈등 조정자, 행정 감시자이며,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며,
-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며,
- 조직운영에 있어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의원징계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다.

제7대 양산시의회 개원

의장 서진부·부의장 김효진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기획행정위원장 정석자·도시건설위원장 임정섭 선출

양산시민에게 힘이 되고 책임감 있게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양산시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다짐합니다.”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로 부름 받은 17명의 제7대 양산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하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7월 2일 오전 10시 양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56회 임시회에서는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차 본회의 선거 결과 서진부 의원

(서창·소주)이 의장으로, 부의장에는 김효진 의원(물금·원동)이 각각 당선되었다.

의장으로 선출된 서진부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의장으로 선출해준 의원님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당리당락을 떠나 타협과 양보, 협치, 그리고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양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효진 의원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제7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갈등의 조장자가 아닌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이어졌다. 제1차 본회의 상임위 위원장 선거 결과 의회운영위원장에는 박일배 의원(덕계·평산), 기획행정 위원장은 정석자 의원(동면·양주), 도시건설위원장은 임정섭 의원(물금·원동)이 각각 당선돼 전반기동안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끌게 됐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배)는 박일배 의원, 김효진 의원, 박재우 의원, 이장호 의원, 박미혜 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김효진 의원, 이종희 의원, 정석자 의원,

곽종포 의원, 박재우 의원, 김혜림 의원, 박미혜 의원, 정숙남 의원 8명,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는 박일배 의원, 이상정 의원, 이용식 의원, 임정섭 의원, 문신우 의원, 김태우 의원, 최선호 의원, 이장호 의원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후 이날 오후 2시에 제7대 양산시의회 개원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개원식은 제7호 태풍 브라비아로 인해 약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일권 양산시장과 집행부 관리자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개원을 축하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기원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의원들 한명 한명은 단상에 나와 자기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으며 이후 서진부 의장의 선서, 김혜림 의원의 의원윤리강령 대표낭독, 개원사, 김일권 시장의 축사를 끝으로 제7대 양산시의회 개원식을 끝마쳤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정활동 펼쳐

2018년 하반기 의정활동 결산

제7대 양산시의회 의원 17명

2018년 7월 2일 제156회 임시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44일간의 회기,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 149건 처리,

내실 있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주요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

왕성한 의정활동 펼쳐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7대 양산시의회 의원 17명은 2018년 7월 2일 제156회 임시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35만 양산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의 힘이 되는 지역의 일꾼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제7대 양산시의회는 정례회 2회 38일, 임시회 2회 6일 등 총 44일의 회기를 통해 149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했다. 구체적인 의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조례안 87건, 예산결의안 7건, 동의안 29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포함)안 2건, 건의안 3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5건, 기타 안건 15건 등이다. 또한 의원들의 시정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정활동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건의안 등으로 이어졌다.

제7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은 서진부 의장, 김효진 부의장,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 정석자 기획행정위원장,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 선출 등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당리당락을 떠나 타협과 양보, 협치, 그리고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하여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56회 임시회에서 제7대 양산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의장에 서진부 의원, 부의장에 김효진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에 정석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에 임정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에 박일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제15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임정섭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승·하차 전용구역 및 어린이 통학전용 버스베이(BUS BAY)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양산시장은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임정섭 의원은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였고, 양산시장은 시설보완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답변하였다.

제1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이장호 의원은 웅상지역과 동면·양주동, 그리고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까지 양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하여 가칭 “양산동부소방서”가 추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고, 이종희 의원은 지난 임



시회의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처리과정 등을 언급하며 김일권 양산시장의 포용적인 시정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용식 의원은 슬럼화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양산시에 요구하였다.

최선호 의원은 청원경찰의 증원 및 적정배치, 직무능력 강화 등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의 방호(防護)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였으며, 곽종포 의원은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능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관련 심의회 구성과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양산시에 요구하였고, 정숙남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양산시가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임정섭 의원은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김태우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의 확대 실시를 제안하였다.

건의안을 통해 박일배 의원은 웅상지역 내 등기소 부재로 인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양산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등 법원 민원행정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웅상출장소 청내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줄 것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 건의하였고, 이종희 의원은 산막산단에 위치한 소토초등학교가 공장과 도로에 둘러싸여 학생들이 각종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소토초등학교를 이전하여 줄 것을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에 건의하였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용식 의원은 먼저 원도심의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부도시계획도로(2-7호선) 개설공사 재추진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산시장은 토지소유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해당도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구)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양산시장은 원도심 전체를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사업부지와 접해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일방통행로 설치, 교통신호체계

개선, 차로 운영방안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호체계 또한 양산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효진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우리시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산시장은 반려동물 복지센터 조성을 비롯하여 동물 등록제 시행, 유기동물 입양행사 추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답하였으며, 경남 도내 최초로 황산공원 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장 설치 제안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양산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초부터 관할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을 사전 협의했으나 당시 하천법에 의거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허용 시 다른 동물의 무분별한 놀이시설 요구, 하천 이용자의 불편 및 거부감, 야생동물 서식공간이 하천 생태환경 저해 등의 사유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시에서는 황산공원이 아니더라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제1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최선호 의원은 동면 신도시 일대에 부족한 사회교육시설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인 공공도서관 설립을 요구하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 하였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송 공공주택지구의 기반시설에 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김태우 의원은 최근 시체육회 종목별 단체회장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교체 또는 공석으로 운영의 혼란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체육회 임원진 구성에 공정함을 기해줄 것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당부하였고, 또한 석산신도시 등 도심 인구증가로 인한 남양산 IC 교통체증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임정섭 의원은 원동면의 인구증가를 위한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제안했다.

박일배 의원은 고리원전지역과 가까이 있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고리원전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운송하기 위한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전자파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웅상지역 주민들을 위해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도심구간

의 지중화사업 시행을 촉구하였다.

정숙남 의원은 도시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연계하여 주택밀집 지역 쓰레기 무단 배출과 골목마다 넘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종희 의원은 매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쓰레기 배출의 최소화화를 위하여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양산시장에게 당부하였고, 이용식 의원은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효진 의원은 2019년도 예산안을 시민에게 알리고 양산시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편성하지 못했다면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문함과 동시에 공직자 윤리 강화에 대하여 진언하였고, 김혜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을 하였다.

건의문을 통해 박일배 의원은 고속철 KTX가 운행 중인 5개 노선 중 경부선에 KTX와 SRT 전체 운행의 절반 이상이 운행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은 경부고속도로 노포 IC, 부산시외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외곽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교통 요충지로 KTX 중간 역사 설치시 연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부·울·경 인근 지역 150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이용객들의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KTX 경부선의 고속철 선로인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노선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 총 51.7 km 거리 중 울산기점 27.5km 지점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KTX 중간 역사” 설치를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용식 의원은 먼저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종점역인 (가칭)북정역 주변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산시장은 북정역 인근에 교통광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환승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이용객 위주의 편리한 환승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하였으며, 극심한 교통 정체 구간인 국도 35호선 신기사거리에 지하차도 등 교통 소통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양산시장은 양산교 재가설(왕복 4차선 → 왕복 6차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양산2교 건설 및 국도35호 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며, 지하차도 건설은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우리시이므로 전액 시비(400억원 정도)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재정 등 제반여건상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북정대동벨라트와 북정일반공업지역 사이에 공장 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확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양산시장은 추후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 차폐 숲 조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악취 등 각종 환경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박재우 의원은 상북 소토초등학교 주변 공장지역으로 인한 대책과 이전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양산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학교 이전은 교육감 관장사무이지만 지난 2017년에 동일한 문제로 어곡초등학교 이설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답변하였고, 상북 내전마을, 울리마을, 소노마을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양산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기존 자연마을의 이전은 현행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장호 의원은 공무원 인사의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진행하는 여부에 대해 질의 하였고, 이에 양산시장은 공무원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기타 인사제도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여 인사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밖에도 비회기 기간에는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협의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회운영에 따른 협의사항 처리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크고 작은 민원 43건을 해결하였다.

■ 회기 및 안건처리 현황

구분	회기	안건처리현황						
		계	조례안	예산·결산 ·기금안	공유재산 관리계안	동의안	건의안	기타 안건
계	44일간	149	87	7	2	29	3	21
제156회 임시회	2018.7.2.(1일간)	9	1	0	0	0	0	8
제157회 임시회	2018.7.9. ~ 7.13.(5일간)	7	1	0	0	5	0	1
제158회 제1차 정례회	2018.9.3. ~ 9.21.(19일간)	48	32	3	1	7	2	3
제159회 제2차 정례회	2018.12.3. ~ 12.21.(19일간)	85	53	4	1	17	1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 감사
시정·처리요구 66건, 건의 123건 등 189건 채택

양산시의회의는 지난해 제 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한데 이어 제 158회 제 1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양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산시와 양산시 소속 기관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 감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의원들은 감사 기간은 물론 감사 기간 전부터 현장 확인, 시민여론 청취, 집행부 자료 요구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양산시의회의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새롭게 의회를 구성한 제7대 양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회 전체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시의회의는 감사기간 동안 모두 189건에 대해 시정·처리요구 66건, 건의 123건 등 지적사항을 감사보

고서에 채택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쳤다.

9월21일 열린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산시의회의는 상임위별 감사총평을 통해 양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하도록 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보완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서진부 양산시의회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실과별	처리 의견		
	계	시정·처리요구	건의
의회사무국	4	2	2

소 관 별	지 적 사 항	처리의견
의 회 사 무 국	○ 도서 선정 기준 및 운영 방법 개선 ○ 의회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적시 시행 및 국회와 의정자료 공유통합시스템 협약 추진	시정·처리 요구
	○ 체계적 청사 사용 계획 수립 ○ 의회 공식 접수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건의

■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실 과 별		처리의견		
		계	건의	시정·처리요구
합 계		90	68	22
공 통		6	1	5
기획관		7	6	1
공보관		3	3	0
감사관		0	0	0
행정국	행정과	12	11	1
	세무과	1	1	0
	징수과	0	0	0
	회계과	0	0	0
	민원지적과	2	2	0
	정보통계과	4	4	0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6	5	1
	사회복지과	8	8	0
	여성가족과	3	3	0
	문화관광과	6	4	2
	행복교육과	5	2	3
	체육지원과	6	2	4
보건소	보건행정과	2	2	0
	건강증진과	2	2	0
	웅상보건지소	1	1	0
시립박물관		1	0	1
시립도서관		2	2	0
출) 총무과		1	1	0
출) 복지문화과		3	2	1
시설관리공단		2	1	1
복지재단		3	1	2
읍·면·동		4	4	0

실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공통	이월사업 과다	시정·처리요구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후 행정절차 이행 점검	시정·처리요구
	시 산하 재단 및 단체 감사 철저	시정·처리요구
	기본경비 집행 부적정	시정·처리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건의
	예산 요구 시 주의점 당부	시정·처리요구
기획관	읍·면·동 포괄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건의
	채무(부채) 현황 공개 철저	건의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	건의
	올바른 예비비 집행 촉구	시정·처리요구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건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하여	건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하여	건의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내 실내체육관 대관방법 개선	건의
	국민체육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운영방법 개선	시정·처리요구
공보관	양산시보 발간 및 배부 철저	건의
	영상광고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반영	건의
	고문번호사 위촉방법 개선	건의
행정과	민간단체 지원예산 집행감독 철저	건의
	자율방범대 적정 예산 편성	건의
	효율성 제고	건의
	공무직 전환에 대하여	건의
	공무직 업무방법 개선	시정·처리요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촉구 및 대안 제시	건의
	공무원 정년 보장에 대하여	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촉구	건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강구	건의
	명예시민 관리 철저	건의
	양산시 민간단체 주관 시상 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관리 철저	건의
세무과	지방세 납부자 편의 제공에 대해	건의
민원지적과	친절도 향상 대책 마련	건의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거래금액의 적성성 제고	건의
정보통계과	골목길 안전지킴이 서비스 운영 철저	건의
	3D과학체험관 시설 개선	건의
	홈페이지 관리 철저	건의
	사랑의 PC보급 관리 철저	건의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추진 철저	건의

실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도개발 사업 집행잔액 과다	시정·처리요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비 체불	건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련	건의
	월남참전용사 예우 철저	건의
	3.1절 100주년 행사 관련	건의
사회복지과	수요자 입장에서 사회복지시설 점검	건의
	희망양산카드 사용 관련	건의
	경로당 신축관련	건의
	대한노인지회 연회비 납부 부적절	시정·처리요구
	시립 납골당 추진 필요	건의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 본인포기 대책 수립	건의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과 관심 촉구	건의
	장애인 등급제 폐지 대비	건의
복지재단	기부금 내역 작성철저	시정·처리요구
	기부금 잉여금 과다	시정·처리요구
	복지재단 채용문제 관련	건의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지도점검	건의
	관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건의
	여성단체 통합에 대하여	건의
문화관광과	황산공원 야간경관 조성	건의
	양산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관광지 유지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거리공연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입법예고 시 업무철저	시정·처리요구
	삼량문화 축전 관련	건의
행복교육과	사립유치원 지원(안전조끼 등) 신중 검토	시정·처리요구
	시민평생교육 확대 요청	건의
	영어 거점 초등학교 활용을 통한 영어교육활성화	건의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철저	시정·처리요구
	청소년 회관 관리업무 조정	시정·처리요구
체육지원과	양산시 체육회 감독 철저	시정·처리요구
	시 운동부(선수) 숙소 마련	건의
	여자축구단 전국단위 대회 유치 제안	건의
	체육회 조직 정비	시정·처리요구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 사용허가 철저	시정·처리요구
	체육시설 사용허가 범위 확대(전용시간대 운영)	시정·처리요구
보건행정과	응급약품(뱀물림, 벌쏘임) 구비 철저	건의
	AIDS 환자 관리 철저	건의

실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건강증진과	금연정책 강력 추진	건의
	아토피 예방 사업 홍보 철저	건의
웅상보건지소	달빛약국 경쟁력 약화대책 수립	건의
출)총무과	퍼스트 리더 양성과정에 대하여	건의
출)복지문화과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철저	건의
	웅상화야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발전	건의
	명동공원 물놀이장 사후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시립박물관	박물관 및 문화원 대관업무 철저	시정·처리요구
	북스타트 사업 활성화 추진	건의
	작은 도서관 지원 철저	건의
읍·면·동	열병합발전소 관련 주민홍보	건의
읍·면·동	매화축제 등 각종 축제의 내실화 추진	건의
읍면동(행정과)	마을회관 관리방안 강구	건의
읍·면·동	읍면동 생활불편개선 사업비 편성 관련	건의

■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실과별		처리 의견		
		계	건의	시정·처리요구
합 계		95	53	42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7	3	4
	환경관리과	6	3	3
	위생과	1	0	1
	자원순환과	6	5	1
	산림과	2	1	1
	공원과	5	2	3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8	4	4
	도시과	6	5	1
	도로시설과	4	2	2
	도로관리과	3	1	2
	건설과	2	0	2
	교통과	5	3	2
개발주택국	도시개발과	4	4	0
	건축과	3	3	0
	공동주택과	3	1	2
	원스톱허가과	1	1	0

실 과 별		처리의견		
		계	건의	시정·처리요구
양방향노화산업국	양방향노화과	2	2	0
	투자유치과	5	2	3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3	1	2
	농업기술과	2	0	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5	3	2
	정수과	5	3	2
	하수과	1	1	0
차량등록사업소		1	0	1
웅 상 출 장 소	경제환경과	1	1	0
	도시건설과	4	2	2

실 과	지 적 사 항	조치계획
일자리경제과	남부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강구	시정·처리요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방안 운영 시정	시정·처리요구
	남부시장 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시행	건의
	일자리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검토	건의
	동부양산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운행사업 검토	건의
	송전설로 및 배전설로 지중화 사업 조속 완료	시정·처리요구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시정·처리요구
환경관리과	북정 대동빌라트 약취 문제 대책 강구	시정·처리요구
	대기환경 공해 장기 대안 마련	건의
	운행차 수시점검 단속 비디오카메라 점검 및 교체	시정·처리요구
	기업체 LNG열원 전환 독려	건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방안 검토	건의
	축산농가 약취 강경 단속 실시 요구	시정·처리요구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자원순환과	양산자원회수시설 운영 방안 재검토	건의
	명곡재활용 선별장 운영 준비 철저	건의
	유산폐기물매립장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건의
	생활쓰레기수집 민간위탁 시 업체참여 기회 확대	건의
	공동주택 음식물류감량기기 등 설치 확대 방안 마련	건의
	의류수거함 관리 대책 마련	시정·처리요구
산림과	임도의 탄력적 개방 고려	건의
	호계동 일원 유실 산림지 실태 조사 및 조치	시정·처리요구
공원과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후 우리 시 입장 전달	건의
	벽천분수 설치 수립 철저 및 운영 현실화	시정·처리요구

실과	지 적 사 항	조치계획
공원과	공원 목적에 맞는 이용 활성화	시정·처리요구
	삼성동 내 공원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북정도 대동빌라트 인근 차폐숲 조성 검토	건의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	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대비 종합대책 마련	건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방독면 보급률 확보 철저	건의
	방사능방재 정보 앱 홍보 철저	시정·처리요구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	시정·처리요구
	가칭 동부양산소방서 신설관련 업무 추진 철저	건의
	재난관리기금운용 철저	시정·처리요구
도시과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 허가관련 업무 철저	건의
	부산대병원~디자인공원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검토	건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철저	건의
	도시재생뉴딜공모 사업 추진 철저	건의
	평산동 사면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철저	시정·처리요구
	평산동 어린이 공원 위치 부적정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도로시설과	평산동 태원·봉우아파트 인근 도로 인도 설치	건의
	다방동 만남의 광장 활성화 대책 마련	시정·처리요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업무 철저	시정·처리요구
	국지도 60호선 해강아파트 구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
도로관리과	도로유지관리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시정·처리요구
	자전거도로 헬멧 착용 의무화 준비 만전	시정·처리요구
	무단방치 자전거를 활용한 사회적 기업 연계 사업 추진	건의
건설과	하천 준설 및 산책로 정비	시정·처리요구
	가산산업단지 조성 부지 내 농로 등 정비	시정·처리요구
교통과	소방시설 설치 주변 주·정차 방지를 위한 홍보 철저	시정·처리요구
	교통시설물 위치 파악 및 검토	시정·처리요구
	택시승강장 설치 검토	건의
	증산신도시 버스 노선 검토	건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검토	건의
도시개발과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 철저	건의
	석산신도시와 물금신도시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건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건의
	사송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의
건축과	중부동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도심녹화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기준 재검토	건의

실과	지 적 사 항	조치계획
원스톱허가과	건축사·토목설계사 워크숍 참여 대상 확대	건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이행사항 점검 철저	시정·처리요구
	공동주택단지 민간자본보조 확대 시행 검토	건의
	공동주택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시정·처리요구
양방향노화과	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건립추진 및 운영준비 철저	건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희부지 개발에 시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건의
투자유치과	민자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 철저	시정·처리요구
	가산산단 조성 업무 철저	건의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하천부분 설계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시정·처리요구
	혁신지원센터 건립 후 운영의 내실화 준비 철저	건의
	양산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	시정·처리요구
농정과	황산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재검토	시정·처리요구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지역농가농산물 매입 비중 확대 검토	건의
	향토음식 자원화 품질향상 시범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농업기술과	축산종합방역소 조속한 향후 계획수립 및 이행	시정·처리요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	시정·처리요구
수도과	누수율 제고 및 상수도관망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검토	건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관련 업무 철저	건의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 추진 철저	건의
	소화전 신설 및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정수과	낙동강 원수관리 철저 및 대체수원 개발 검토	건의
	약수터 수질 검사 철저	건의
	취수장·정수장 보안대책 강구	시정·처리요구
	고도 정수처리시설(전오전)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건의
	수질모니터반의 실질적 운영 방안 모색	시정·처리요구
하수과	수질정화공원 시설 개방 검토	건의
차량등록사업소	무단방치차량 관리 철저	시정·처리요구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평산동 공용주차장 설치 검토	건의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 추진 철저	시정·처리요구
	와지공단 ~ 양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항 검토	건의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적극행정 실천	건의
	웅상센트럴파크 사업 추진 철저	시정·처리요구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세출예산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등 지적

양산시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양산시장이 양산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최종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2천 12억 9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775억 7천 2백만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1천 237억 1천 8백만원이었다. 또한, 세출 결산액은 9천 194억 6천 3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2천 818억 2천 7백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전체 이월액이 1천 660억 6천만원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천 96억 6천 7백만원이었다.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종희 의원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에서 지적된 문제점으로 첫째, 세출예산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2017 회계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2천 774억 4천 3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3.2%를 차지하여 매년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세출예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발생 최소화 노력해 줄 것과 둘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로 2016 회계연도 대비 2017 회계연도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64% 가량 늘어나 보조금 관리 및 집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종희 위원장은 “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외에도 결산검사 시 결산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7 회계연도 결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201,290	919,463	281,827	166,060	134,812	29,784	1,464	6,100	109,667
일반회계	1,077,572	843,704	233,868	162,478	132,258	28,756	1,464	6,039	65,351
특별회계	123,718	75,759	47,959	3,582	2,554	1,028	-	61	44,316
공기업 특별회계	92,289	58,403	33,886	2,554	2,554	-	-	-	31,332
기타 특별회계	31,429	17,356	14,073	1,028	-	1,028	-	61	12,984



- 1) 계속비집행 : 2,824백만원
- 2) 기금현재액 : 44,061백만원
- 3) 채권현재액 : 8,729백만원
- 4) 채무현재액 : 없음
- 5) 공유재산 현재액
 - 토 지 : 31,882천㎡ 1,515,737백만원
 - 건 물 : 490천㎡ 451,890백만원
 - 기 타 : 604,977건 1,025,561백만원
- 6) 물품현재액 : 1,125종 12,771백만원
- 7) 예비비 지출
 - 일반회계 :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 44,435백만원 중 2,13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830백만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30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 :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 2,100백만원 중 지출결정액 없음
 - 기타특별회계 :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 11,658백만원 중 지출결정액 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재산상태	계	상수도	하수도
자산총액	622,731	250,788	371,943
부채총액	81,648	629	81,019
자본총액	541,083	250,160	290,923

사업 필요성·형평성 고려 시민 복리 최우선

2019년도 당초예산 1조1천405억9천645만4천원으로 확정

양산시의회는 2018년 12월 21일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 당초예산을 1조1천405억9천645만4천원으로 확정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1천405억9천64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72억3천539만3천원 대비 12.13%인 1천233억6천106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조88억5천45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천948억402만원 대비 12.75%인 1천140억5천만53만6천원 증액되었다.

특별회계는 1천317억4천18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224억3천137만3천원 대비7.6%인 93억1천52만5천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양산시의회는 양산시가 심의 요청한 1조1천405억9천645만4천원 가운데 시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의결하고, 세출분야는 47억8천374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가결하였다.

■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위원회별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금 회	증감률
				증·감(△)	
합 계	계	1,140,596,454	1,017,235,393	123,361,061	12.13%
	일반회계	1,008,854,556	894,804,020	114,050,536	12.75%
	특별회계	131,741,898	122,431,373	9,310,525	7.60%
의회운영 위원회	소 계	3,143,056	3,569,281	△ 426,225	△ 11.94%
	일반회계	3,143,056	3,569,281	△ 426,225	△ 11.94%
	특별회계	-	-	-	-
기획행정 위원회	소 계	573,787,427	515,017,947	58,769,480	11.41%
	일반회계	570,568,800	511,935,794	58,633,006	11.45%
	특별회계	3,218,627	3,082,153	136,474	4.43%
도시건설 위원회	소 계	563,665,971	498,648,165	65,017,806	13.04%
	일반회계	435,142,700	379,298,945	55,843,755	14.72%
	특별회계	128,523,271	119,349,220	9,174,051	7.69%

■ 2019년도 예산안 세출분야(일반회계) 삭감액 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액	삭감내역	비고 (삭감사유)
		30건	22,153,963	4,783,746	17,370,217		
기획관	201-01 (사무관리비)	서울사무소 운영	3,600	3,600	-	시비	사업시기의 부적정
	경상전출금 (309-01)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4,450,689	52,952	14,397,737	시비	전출금 일부 삭감
회계과	201-01 (사무관리비)	양산시 서울사무소 및 숙소 임대료	31,200	31,200	-	시비	사업시기의 부적정
	201-02 (공공운영비)	양산시 서울사무소 및 숙소 관리비	12,000	12,000	-	시비	사업시기의 부적정
	406-01 (기타자본이전)	양산시 서울사무소 및 숙소 보증금	45,000	45,000	-	시비	사업시기의 부적정
주민생활 지원과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자활연계	16,164	16,164	-	시비	사업시기의 부적정
문화 관광과	401-01 (시설비)	양산문화예술회관 광장 공원화 사업	950,000	950,000	-	시비	사업 시기성 및 사업효과 미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통도사국제템플 스테이관 세면장, 화장실신축공사(설계)	50,770	50,770	-	시비	국비 확보 필요
행복 교육과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유아 E-러닝 스쿨 운영	100,000	100,000	-	시비	사업 부적정
	401-01 (시설비)	체험수학구조물 설치	300,000	300,000	-	시비	관련법 부적합
체육지원과	405-01 (자산취득비)	시청 여자탁구 선수단 지원	4,780	1,300	3,480	시비	물품정수미승인 (노트북1,300천원)
	401-01 (시설비)	웅상체육공원생활 체육시설조성(야구장)	420,000	120,000	300,000	시비 120,000	공유재산 관리계획불승인
출)총무과	401-01 (시설비)	웅상출장소 청사 청사증축 설계용역비	180,000	180,000	-	시비	투자심사 미승인
시립도서관	405-01 (자산취득비)	서가 및 집기 구입	20,000	1,000	19,000	시비 1,000	노트북정수미승인 (노트북1,000천원)
원동면	405-02 (도서구입비)	원동문화체육센터 도서 구입	1,000	1,000	-	시비	사업 중복
삼성동	401-01 (시설비)	민원실강화유리 및 안전필름 스크린 설치공사	15,000	15,000	-	시비	사업 효과 미비
환경관리과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원	57,000	57,000	-	시비	형평성 제고
공원과	401-01 (시설비)	워터파크 내 화장실 증축	180,000	18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 (시설비)	명동공원 야외무대 정비	300,000	30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단위 : 천원)

부 서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액	삭감내역	비고 (삭감사유)
체육지원과	405-01 (자산취득비)	시청 여자탁구 선수단 지원	4,780	1,300	3,480	시비	물품정수미승인 (노트북1,300천원)
	401-01 (시설비)	웅상체육공원생활 체육시설조성(야구장)	420,000	120,000	300,000	시비 120,000	공유재산 관리계획불승인
출)총무과	401-01 (시설비)	웅상출장소 청사 청사증축 설계용역비	180,000	180,000	-	시비	투자심사 미승인
시립도서관	405-01 (자산취득비)	서가 및 집기 구입	20,000	1,000	19,000	시비 1,000	노트북정수미승인 (노트북1,000천원)
원동면	405-02 (도서구입비)	원동문화체육센터 도서 구입	1,000	1,000	-	시비	사업 중복
삼성동	401-01 (시설비)	민원실강화유리 및 안전필름 스크린 설치공사	15,000	15,000	-	시비	사업 효과 미비
환경관리과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원	57,000	57,000	-	시비	형평성 제고
공원과	401-01 (시설비)	워터파크 내 화장실 증축	180,000	18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 (시설비)	명동공원 야외무대 정비	300,000	30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도로시설과	401-01 (시설비)	상북상삼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개설	30,000	3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 (시설비)	상북소도도시계획도로 (중2-12호선)개설	3,050,000	400,000	2,650,000	시비	사업량 과다
	401-01 (시설비)	북정도시계획도로 (소2-104호선)개설	1,230,000	1,23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 (시설비)	물금가촌도시계획도로 (소2-437호선)개설	30,000	3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 (시설비)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 (소3-14호선)개설	25,000	25,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 (시설비)	호계도시계획도로 (소1-101호선)개설	25,000	25,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 (시설비)	호계도시계획도로 (소1-99호선)개설	30,000	3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 (시설비)	유산도시계획도로 (소1-76호선)개설	30,000	3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도로관리과	201-01 (사무관리비)	노면청소차 수거폐기물 처리비	77,760	77,760	-	시비	사업 불필요
도시건설과	401-01 (시설비)	용당도시계획도로 (소2-29호선) 개설공사	450,000	450,000	-	시비	사업 불필요
	401-01 (시설비)	주진도시계획도로 (소2-114호선)개설	39,000	39,000	-	시비	사업 불필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시민복지증진 항상 최우선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양산시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7일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양산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1천273억1천32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944억9천240만9천원 대비 3%인 328억2천85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다.

일반회계는 9천997억8천153만2천으로 기정예산액 9천709억1천597만5천원 대비 2.97%인 288억6천555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1천275

억3천17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235억7천643만4천원 대비 3.2%인 39억5천529만5천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양산시의회는 양산시가 심의 요청한 1조1천273억1천326만1천원 가운데 예산안 항목 하나하나 심의에 신중을 가해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하고 세출분야는 2억6천909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가결, 세출분야 역시 원안가결 한 뒤 의결했다.

■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위원회별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금 회	증감률
				증·감(△)	
합 계	계	1,127,313,261	1,094,492,409	32,820,852	3.00%
	일반회계	999,781,532	970,915,975	28,865,557	2.97%
	특별회계	127,531,729	123,576,434	3,955,295	3.20%
의회운영 위원회	소 계	3,441,932	3,627,277	△ 185,345	△ 5.11%
	일반회계	3,441,932	3,627,277	△ 185,345	△ 5.11%
	특별회계	-	-	-	-
기획행정 위원회	소 계	536,433,388	553,281,169	△ 16,847,781	△ 3.05%
	일반회계	533,252,647	550,109,681	△ 16,857,034	△ 3.06%
	특별회계	3,180,741	3,171,488	9,253	0.29%
도시건설 위원회	소 계	587,437,941	537,583,963	49,853,978	9.27%
	일반회계	463,086,953	417,179,017	45,907,936	11.00%
	특별회계	124,350,988	120,404,946	3,946,042	3.28%

사업 타당성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 예산 수립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양산시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결하였다.

양산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1천261억9천14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천273억1천326만1천원 대비 0.1%인 11억2천179만3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천944억268만4천으로 기정예산액 9천997억8천153만2천원 대비 0.54%인 53억7

천884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1천317억8천87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275억3천172만9천원 대비 3.34%인 42억5천705만5천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양산시의회는 양산시가 심의 요청한 1조1천261억9천146만8천원가운데 사업 타당성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를 원안가결하였다.

■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위원회별	회 계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금 회	증감률
				증·감(△)	
합 계	계	1,126,191,468	1,127,313,261	△1,121,793	△0.10%
	일반회계	994,402,684	999,781,532	△5,378,848	△0.54%
	특별회계	131,788,784	127,531,729	4,257,055	3.34%
의회운영 위원회	소 계	3,258,854	3,441,932	△183,078	△5.32%
	일반회계	3,258,854	3,441,932	△183,078	△5.32%
	특별회계	-	-	-	-
기획행정 위원회	소 계	538,523,998	536,483,388	2,040,610	0.38%
	일반회계	535,334,749	533,302,647	2,032,102	0.38%
	특별회계	3,189,249	3,180,741	8,508	0.27%
도시건설 위원회	소 계	584,408,616	587,387,941	△2,979,325	△0.51%
	일반회계	455,809,081	463,036,953	△7,227,872	△1.56%
	특별회계	128,599,535	124,350,988	4,248,547	3.42%

"35만 시민의 대변자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156회 임시회(2018년 7월 2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임정섭 의원



서진부 의원



이상정 의원



김효진 의원



이용식 의원



곽종포 의원



김태우 의원

제안이유

양산시의회 의원정수가 16명에서 17명(비례대표 2명 포함)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안 제2조)

현 행		개 정	
위원회	위원 정수	위원회	위원 정수
의회운영	5	의회운영	5명 이내
기획행정	8	기획행정	8명 이내
도시건설	7	도시건설	8명 이내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8년 9월 3일)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김혜림 의원



임정섭 의원



박재우 의원

제안이유

- 국가의 주요정책과제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농업 확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친환경농업의 목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토양보호와 함께 시민들 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건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8년 9월 3일)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의원



박일배 의원



김효진 의원



정석사 의원



임정섭 의원



이상정 의원



이종희 의원



이용식 의원



김태우 의원



최선호 의원



박재우 의원



이장호 의원



김혜림 의원

제안이유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 시 체육경기(체육행사포함)와 체육이외 행사로 구분하여 기준요금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일반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체육이외 행사로 규정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체육행사에 포함하여 요금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체육행사의 범위를 변경(안 제7조)
 - (변경) 대한체육회 등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등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허가)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③ ----- -----.
1.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u>아마추어</u> 체육행사 <u>및</u>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동호인단체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1.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u>아마추어</u> 체육행사 <u>그리고</u>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동호인단체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2. ~ 4. (현행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제1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8년 9월 3일)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의원



박일배 의원



김효진 의원



정석자 의원



임정섭 의원



이종희 의원



이용식 의원



김태우 의원



최선호 의원



박재우 의원



이장호 의원



김혜림 의원



박미해 의원



정숙남 의원

제안이유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보충질문 시간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명전자투표 반영(안 제41조 제1항)
 - (변경) 기립 또는 거수 → 기명전자투표 우선 실시
- 나. 무기명전자투표 반영(안 제41조 제2항)
- 다. 전자투표의 의한 투표절차 반영(안 제42조 제1항)
- 라. 질문시간 등 조정(안 제66조의2 제5항)
 - (변경)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 본질문, 보충질문 **합해서 30분**(시간조정)

※ 지방자치법 제24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반영

-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만 다른 의원 1명에 한정하여 보충질문 가능, 질문시간은 10분 초과 안됨

■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8년 9월 3일)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



박일배 의원

제안이유

통일교육을 지원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통일교육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적극 추진
- 다.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 라. 재정지원(안 제7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년 12월 11일)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의원



박일배 의원

제안이유

- 가. 월정수당 자율결정을 통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과 그 범위 및 인상 기준을 구체적인 계산식과 비율 등으로 하던 것을 지역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나.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
(제5조 1항, 2항 및 별표 1, 별표 2 삭제)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함.

주요내용

- 가. 2019년도 월정수당 금액 및 2020~2022년도 인상을 결정(안 제2조)
- (당초) 2. 월정수당 : 월 2,008,000원
 - (개정) 2. 2019년 월정수당 : 2,054,000원
 - 3. 2020년~2022년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공무원 보수 인상을 70%를 반영한 금액에서 백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함.
- 나. 국내여비의 종류 조정(안 제4조제1항)
국내여비의 종류를 기존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에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조정함.
- 다. 여비의 지급기준표 삭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안 제5조)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및 국외 여비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 토록 변경함.

-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년 12월 11일)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의원



김혜림 의원



임정섭 의원



최선호 의원



이정호 의원

제안이유

-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도시농업을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이루고자함.
- 도시농업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나. 도시농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안 제7조~안 제12조)
- 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1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년 12월 11일)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



이용식 의원

제안이유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해제 된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원의 임기만료 및 해촉 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년 12월 11일)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지정 및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



이종희 의원



이용식 의원

제안이유

특화거리와 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특화거리 지정, 기준, 사업평가 등
(안 제7조~안 제12조)
- 다. 사업비 지원(안 제13조)
- 라. 양산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등
(안 제14조~안 제18조)
- 마. 의견청취 등(안 제19조)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 조직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 조직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유사업종에 30개 이상 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30개 이상 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제157회 임시회

■ 심의안건

1.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면 이지더원 3차 리버포레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시립어깨동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양산물금 행복주택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인구 증가에 따른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시민과의 소통창구인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기관별 정원 조정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현행	1,201	627	24	108	118	87	47	75	115
개정안	1,203	629	24	108	118	87	47	75	115
증감	2	2	-	-	-	-	-	-	-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계	일반직								전문경력관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1,201	1,168	1	12	62	277	331	297	187	1	1	10	21	1
개정안	1,203	1,170	1	12	63	277	332	297	187	1	1	10	21	1
증감	2	2	-	-	1	-	1	-	-	-	-	-	-	-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면 이지더원 3차 리버포레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한 동면 이지더원 3차 리버포레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명)

소재지	보육시설 면적	예상 정원	수정안
양산시 동면 금오16길 100 (동면 이지더원3차리버포레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380.615	80	세대수 : 1,083



나. 주요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시립어깨동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13.11.1 ~ '18.10.31(5년))이 만료되는 시립어깨동무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 m², 명)

시 설 명	소 재 지	보육시설 면적	정 원	비 고
시립어깨동무 어린이집	양산시 고향의 봄5길 19	179.67	27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나. 주요위탁내용

- 위탁구분 : 재위탁
(위탁기간만료시기도래(2013.11. 1~2018.10.31))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위탁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0
운영체의 운영실적	3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물금 행복주택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한 양산물금 행복주택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 m², 명)

소재지	보육시설 면적	예상 정원	수정안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96-1 (양산물금 행복주택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	317.81	70	세대수 : 900

나. 주요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심사방법 :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한 양산물금 행복주택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천원)

소재지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312-1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국공립어린이집)1층
보육시설 면적	316.48
신축 예산	533,400
예산 정원	70명
비 고	신규

※ 어린이집 신축 '17 당초예산 533,400천원 : 국266,700 / 도106,680 / 시160,020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나. 주요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방법 :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각종 보육지원시설이 늘어나면서 급식안전에 대한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정부적인 믿음직한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어린이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해 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여 어린이 급식소에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19. 1. ~ 2021. 12.(3년간)
- 사업예산 : 연간 600백만원(국비 300, 도비 90, 시비 210)
- 사업대상 :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
- 위탁업무
 - 1) 어린이급식시설의 영양·위생 관리
 - 2) 어린이급식시설 식단개발
 - 3) 어린이급식시설 영양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영양 및 위생 강화

나. 수탁기관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7일 이상 일간지 등)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후 종합평가 실시

다. 관련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라. 향후 추진계획

- 2018. 7.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18. 9. :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의 결정
- 2018. 9.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 : 위탁관리 시행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58회 정례회

■ 심의안건

1.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p.30
2.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31
3.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p.32
4.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p.32
5.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산시 이·동·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4. 양산시 3D 과학체험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양산 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시범사업) 연계협력협약 동의안
21. 양산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23. 19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24.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6.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34.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6.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8.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하절기 행락철 홍릉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
40.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중에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
- 나. 공무원외여행심사를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함을 명시(안 제3조3호)
- 다. 오탈자 수정(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3항)
- 라. 팀제변경에 따른 직위명 변경(안 제6조제2항)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여 양산시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나. 「양성평등기본법」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안 제4조)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라. 수당 지급 기준의 명확화(안 제13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②----- ③-----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제3조 (개정과 같음)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②----- ③-----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 부칙(생략)	제4조의2 ~ 부칙(개정안과 같음)

양산시 정책참여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시정에 대한 발전 지향적인 정책비전 제시와 지역혁신 및 현안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 참여 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양산시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및 지역혁신 등에 관한 사항
- 공약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구성인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직 위원

1) 양산시민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분과위원회(안 제9조)

- 구성인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 필요에 의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음

라. 의견청취 등(안 제10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2조 (생략)	제1조~제9조 (제정안과 같음)
제3조(구성)①-----	제3조(구성)①-----
②-----	②-----
1. 양산시민	1.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양산시민 중 공개 모집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및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제6조 (생략)	제4조~제6조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안건을 무효로 하고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듣거나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듣거나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부칙 (생략)	제11조~부칙 (제정안과 같음)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 사무 및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책임성을 높이고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규 위임사무

- 1) 행정과 : 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
 -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 〈웅상출장소 및 관할 4개동 : 서창,소주,평산,덕계〉에 한정함
- 2) 위생과 : 식품영업등록외 8건
 - 식품영업등록에 관한 권한
 - 식품영업 허가에 관한 권한
 - 식품영업신고 등에 관한 권한
 - 품목제조의 보고 및 실적보고에 관한 권한
 - 식품위생 관리 등에 관한 권한
 - 건강기능식품 위생관리등에 관한 권한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 공중위생 관리에 관한 권한
 -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권한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및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 1) 경제기업과 ⇒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 체육지원과
- 2) 공장등록(공장등록, 취소 및 공장임지 기준 확인외 4건) : 일자리경제과 ⇒ 투자유치과
- 3) 청소년 선도 및 육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외 1건) : 여성가족과 ⇒ 행복교육과
- 4)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승인 : 도시과 ⇒ 건설과
- 5) 도로유지 관리(접도구역 관리외 1건, 도로시설물 관리(가로 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 보수),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시행, 공유재산 관리 : 도로과 ⇒ 도로시설과

6) 도로유지 관리(도시계획사업(도로) 업무협의 외 6건), 도로 시설물 관리(도로 손괴자 부담금 부과징수외 6건),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 도로과 ⇒ 도로관리과

7) 상수도 관리(저수조 관리),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관리 : 수도과 ⇒ 정수과

다. 출장소장 위임사무 변경

수도시설 관한 타기관 및 부서 협의(단, 취수, 정수, 도수정수, 송수시설 제외) ⇒ 단서조항 삭제(수도과)

라. 읍면동장 위임사무 삭제

노상적치물(노점상) 지도단속(도로관리과) ⇒ 조직개편으로 도로관리과 신설 및 물금읍 관리인력 부족으로 삭제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수정

민원지적과 10건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문화의 집이 있는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프로그램 중복투자 및 수강료등 형평성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 관련 조항 신설(안 제11조의 2, 제11조의 3, 제11조의 4, 제11조의 5, 제11조의 6, 제11조의 7)

나. '양산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조정(안 별표 1)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 기준 현실화

라.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별표2)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동면 석산금오마을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 적합한 마을명을 부여하

고자 함.

양주동 마을명칭(행정통)이 중앙동과 분동전 마을명칭으로 획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파트명과 연계된 실질적인 마을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면 이통 명칭·정수 관할구역 조정

- 명칭 : 동면 석산금오 ⇒ 석산금오, 석산양우6, 석산이지

- 정수 : 동면 27개마을 ⇒ 29개마을

(석산리 13개마을 ⇒ 15개 마을)

나. 양주동 이통 명칭·정수 관할구역 조정

- 명칭 : 양주동 남부3 ⇒ 양주벽산블루밍

양주동 남부4 ⇒ 양주쌍용

양주동 남부5 ⇒ 현대청어람

양주동 남부6 ⇒ 롯데청어람

양주동 남부7 ⇒ 양주동원

양주동 남부8 ⇒ 경남아너스빌

양주동 남부9 ⇒ 양주이편한

양주동 남부10 ⇒ 양주7

양주동 중서1 ⇒ 대동황토방

양주동 중서2 ⇒ 양주현대

양주동 중서3 ⇒ 양주3

양주동 중서4 ⇒ 양주뜰안채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세징수법」, 「내수면여업법」등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제2017-10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작은 불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수료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증명 수수료 기준 변경(제증명등 수수료 별표1)

- 재직(경력, 퇴직) 증명 및 통(리)장 재직사실 확인 : 무료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토지(임야) 대장(등본) 지가 병기발급 : 삭제

- 개별공시지가 열람 : 삭제

- 관상어 양식업 신고 : 1천원(신설)

-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 3천원(신설)

-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 신청 : 2천원(신설)

- 낚시터업 지위 승계 : 3천원(신설)

- 나. 삭제된 내용과 번호 등 제(諸)정비(제증명등 수수료 별표1)
 - 기 신설 및 삭제된 내용 별표에 <신설> 및 <삭제> 표시 제거
 - 규정에 맞게 번호 순서 재정비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조항이 신설(법률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되어 같은 조 제7항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령 추가
 나. 제4조(시행규칙) → 제17조(시행규칙)로 변경
 다.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및 심사절차, 심사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제5조)
 라.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7조, 제8조)
 바.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금 등의 배분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제11조)
 사.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아.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3조, 제14조)
 자.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16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

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 양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폐지에 따른 해당규정 삭제
 -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상한액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 폐지
 다. 조례 규정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3D 과학체험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학관 입장 제한 사항중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과학관 입장의 제한 사항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보조건 출입 허용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 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 탁 동의안

■ 제안이유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명)

소재지	보육시설 면적	예상 정원	수정안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11 (양산대방노블랜드7차 메가시티 아파트)	371.74	80	세대수 : 2,130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5년
- 예산지원: 150백만원
120백만원(국비50% : 도비25% : 시비25%) + 시비추가 30백만원
- *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비 110백만원/개소(국도비지원)
- * 기자재 구입비 지원 10백만원/개소(국도비지원)
- * 시비 추가 지원 30백만원/개소(자체지원)
- 위탁내용: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심사방법: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다. 향후 추진계획

- '18. 9월: 2회 추경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 확보
- '18. 10월: 위탁운영자 선정
- '18. 11월~12월: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구입
- '19. 1월: 시립어린이집 인가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웅상문예원의 민간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치, 시설, 기능(안 제2조~제4조)

다. 개관 및 휴관(안 제5조)

라.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안 제6조~제10조)

마. 문화강좌 등 운영(안 제11조)

바. 관리위탁(안 제12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문화원 시설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용자의 책임)의 일부조항이 법률에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제17조(관리위탁)를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과 부합되도록 삭제하여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령상 근거 없는 민·형사상 책임규정 삭제(안 제14조제6항)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한 규정 삭제
- 나. 양산문화원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 및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안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 공공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 및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하며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은 법령과 규정내용이 상이하므로 삭제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웅상문예원은 향교가 없는 웅상지역에서 전통문화예술 보급 및 전통·생활예절교육, 유교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교육연구시설로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단위: m², 명)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시 설
웅상문예원	양산시 당촌길 66 (용당동)	432	다목적실(150m ²) 예절교육실(56m ²) 서예교육실(27m ²)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5년
- 위탁내용: 웅상문예원 관리 및 운영 전반
- 신청자격: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문예원의 교육 등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문예원 운영계획의 적정성	40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35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10
수탁기관의 공신력	10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다. 위탁사유

- 전통예절 및 전통문화 등 분야는 민간 전문단체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함
- 특히, 향교기능과 같은 유교문화 예절 교육 등은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우리 시가 직접운영 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필요하며, 향후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점이 있음

라. 향후 추진계획

- '18. 10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
- '18. 11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
- '18. 11월: 위·수탁 협약 체결
- '18. 12월: 수탁기관 운영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인

구 증가로 지도위원 수 증원이 필요한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원 수를 증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4조 중 '10인'을 '15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시범사업) 연계협력협약 동의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및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의거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협약체결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협력하여 대응 투자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약대상: 영산대학교

나. 사업기간: 1년('18.7.1 ~ '19.6.30)

다. 예산지원: 100백만원

※ 총사업비: 1,97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지자체 대응부담금 920백만원, 교비50백만원)

라. 사업내용

- 도내 및 울산소재 지방대학 5개소와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지역 우수인재 양성 후 취업지원
- 참여·연계 기관

구 분	참여기관
지방대학	- 선도대학(1): 경상대학교(진주) - 협력대학(4): 경남대(창원), 인제대(김해), 영산대(양산), 울산대(울산)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주),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송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13개 기관)

- 운영 방법

- 교수진 확보: 공공기관 전·현직 인력 활용
- 교육과정 개설은 선도대학 중심 개설, 필요시 협력대학 개설 운영 가능(기초역량, 핵심역량, 실무역량 3단계 구성, 36학점제 운영)

마. 그간의 추진경과

- '18. 5. 3. :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연계협력 협약 및 대응투자금 지원 요청(영산대)
- '18. 5. 8.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협약서 체결 (양산시 ↔ 영산대학교)
(협약서에 '사업비 지원은 의회 의결을 조건으로 함'을 명시)
- '18. 7. 9. : 지역선도대학유성사업 시범사업 최종 선정 (한국연구재단 → 경상대)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19. 1월부터 3년간
- 사업예산 : 393,598천원(보조사업비 312,452, 시비추가 81,146) [2018년 기준]
- 사업대상 :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 및 가족, 일반지역주민 등
- 주요업무 :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등

나. 위탁운영 현황

- 위탁기관 : 경농의료재단 양산병원(대표자 변원탄)
- 위탁기간 : 2007.04.01.~2018.12.31.(4차에 걸쳐 12년간)
- 조직구성 : 9명(센터장1, 팀장1, 팀원7)
- 전담인력 : 8명(센터장 제외)

다. 수탁기관 선정

- 선정자격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9명 이내로 구성

- 의결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선정기준

-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수탁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 수탁기관의 전문성
- 그 밖에 해당 도시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향후계획

- '18. 11월 중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 '18. 12월 중 :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의 결정
- '18.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지역사회 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독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시설현황

소재지	양산시 중앙로 7-32, 양산시보건복지센터 4층 내
사용면적	100㎡
사업예산	155백만원/연
운영인력규모	5명
비 고	신규 설치

- 위탁기간 : 2018. 11월부터 2020. 12월말까지(3년간)
- 사업대상 :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와 그 가족 등을 포함한 전체 시민
- 주요업무 : 중독상담 및 사례관리,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등

나. 수탁기관 선정

- 선정자격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9명 이내로 구성
 - 의결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선정기준
 - 국립정신의료기관 우선 선정
 -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수탁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전문성
 - 그 밖에 해당 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향후계획
- '18. 10월중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 '18. 10월말 :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의 결정
 - '18. 11월초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18. 11월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2019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 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작은도서관에 독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질 향상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업무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나. 주요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19.3.~11.(9개월)
- 위탁내용 :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 신청자격 :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거 등록된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2016 ~ 2018)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독서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는 평생교육기관

- 모집방법 : 공개모집('19. 1. 모집공고, '19. 2. 사업자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의 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 강사 확보 · 사업결과와 활용	40
사업 운영능력	· 사업의 홍보방법 · 학습자 관리	20
사업의 예산	· 사업비의 타당성	20
수행 실적	· 기존 과정 운영 실적	10
위탁기관 평가	· 타 기관과의 차별성	10

다. 향후계획

- '19. 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19. 3. : 보조금 교부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양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사업 및 위탁 내용

- 1) 사업명 :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 2) 사업기간 : 2018. 10. ~ 2022. 12.(5년간)
- 3) 위탁사업비 : 300 ~ 400백만원 정도/년(발행액의 2~3% 정도)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 수수료 협상

4) 수탁자선정 : 공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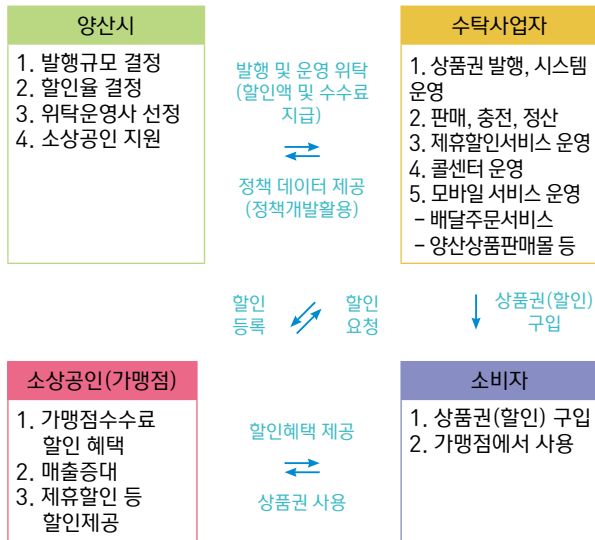
5) 위탁내용

- 양산사랑상품권(선불형카드) 발급
- 양산사랑상품권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상품권의 충전, 결제 및 환급 등 시스템 운영
- 양산사랑상품권 연계 제휴 할인서비스 구축 및 운영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바일 앱 운영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6)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가능

나. 양산사랑상품권 운영 개요



다. 관련근거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3조

라. 향후 추진계획

- 2018. 9. ~ 10. : 수탁사업자 공개 모집 및 선정
- 2018. 10. : 위·수탁협약
- 2018. 11. ~ 12. : 상품권 연계 제휴 할인서비스 등록
- 2019. 1. : 카드 발급 및 운영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의 발행·유통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양산사랑상품권' 정의는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양산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함.(안 제2조)
- 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은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유통지역은 양산시 일원으로 한정토록 함.(안 제4조)
- 라. 판매 및 충전업무는 은행, 점포 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상품권은 구매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구매한도를 월 50만원, 연 400만원으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산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자 청년창업 특별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년' 정의 신설(안 제2조4호)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을 말한다.
- 나. 창업자금 지원 대상 관련 호 신설(안 제10조제1항)
청년창업 특별자금: 청년의 사업장 중 · 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 다. 창업자금 지원대상 관련 호 신설(안 제10조제2항)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장 중 · 개축 후 2년 이내인 자
- 라. 창업자금 지원범위 조항 신설(안 제11조)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

일자리 정책 입안, 심의, 평가를 위해 일자리 분야 전문가와 연령별 시민대표 등 민·관·산·학 대표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 다. 위원장의 직무(안 제12조)
- 라. 회의(안 제13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이유

관내 늘어나는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양산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본 시설에 입주한 기업·기관 및 부대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위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비즈니스센터 사용허가 또는 대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비즈니스센터의 대관료의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비즈니스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운영지원, 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수 정 안				
[별표]				
부대시설 대관료(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면적 (㎡)	단가 (원/㎡·시간)	대관료	비고
컨벤션홀	881	300	264,300원/시간	- 초과시간 : 대관료의 1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료의 20% 가산 - 냉난방시설, 부대장비 사용시 별도 부과할 수 있다. - 08:00~20:00 (12시간/일) -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는 백단위 절사
세미나실	331	200	66,200원/시간	
기업제품 전시·판매장	371	40	178,080원/일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책임감 있는 포획활동 유도과 활동지역의 교류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신속한 대응 및 효과적인 포획활동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 방지단을 직접 고용하거나 권역별로 공개모집, 활동지역 교류 가능(안 제15조제2항)
 - 방지단 신청인원 제한 사항 삭제(안 제15조제 3항, 5항, [별지 제2호서식])
 - 포획물 확인 절차의 간소화 : 확인 표지를 부착한 포획물 사진(안 제15조 제9항)
- 나.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
 -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 600만원 → 1,000만원(안 제21조제2항)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일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금운동을 위해 양산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조정(안 제10조제2항)
- 나.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2017.12.19.)에 따른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10조제3항)
- 다. 위촉직 위원 자격 확대(안 제10조4항)
- 라. 위원회 간사 규정 신설(안 제14조2)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 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17.12.29.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법 화 취지를 조례 목적에 규정하고,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목적에 명시(안 제1조)
- 나. 영업장소 및 영업신고서 첨부서류(안 제2조)
- 다. 영업장소 지정신청 절차(안 제3조)
-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모집방법(안 제4조)
- 마.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안 제5조)
- 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안 제6조)
- 사. 영업신고 표시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지원신청 방법, 선정과정 및 지원제한(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제안이유

양산시 대표 맛집의 발굴·육성을 위한 관리기준 등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차별화된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식·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맛집 육성계획 수립(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다. 맛집 지정·사후관리 및 지원(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맛집 발굴·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소각이 만연한 지역에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불법처리를 근절시키고, 다량 배출처에 대한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를 규정하여 올바른 폐기물 배출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환경감시단 관련 사항 규정 신설(안 제6조, 별표8)
- 나. 다량배출처에 대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규정 개정(안 제8조 제4항, 별표 1)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을 통한 토지이용 간소화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2018. 4. 19.)됨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용도지구를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명칭변경 및 신설지구 사항 반영
(안 제35조, 안 제40조, 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44조, 안 제45조, 안 제46조, 안 제47조, 안 제48조, 안 제49조, 안 제51조, 안 제51조의2)
나.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지구 행위제한 삭제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지원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3조)
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운영 방법과 수행하는 업무 등을 정함(안 제5조)
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안 제6조)
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제안이유

주진동 산67-6번지 일원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해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제사유

양산시 주진동 산67-6번지 일원의 신명공원은 최초 결정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이며, 실효시기(2020. 7. 1.)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해제 신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근린공원)을 해제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해제)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347	신명공원	근린공원	주진동 524-3	62,100	감) 62,100	-	경고 30호 ('95. 2. 24)	

- 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해제)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폐지내용	변경사유
347	신명공원	공원 폐지 (감. 62,100㎡)	실효시기(2020. 7. 1.)까지 집행 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견(의견제시)

안건명 :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집행가능여부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황산공원 내 추진 중에 있는 유기사설(미니기차)을 낙동강 수변 시설로 반영하고 동시에 미니기차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에 유기사설(미니기차) 반영
(안제3조 별표2)
나. 유기사설(미니기차)에 대한 사용료 반영(안제8조 별표3)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절기 행락철 홍릉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행락철 홍릉사 계곡을 찾아오는 행락객 및 피서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은 영 사업을 추진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1) 위탁사무 : 행락철 홍릉사 주정차 지도업무
 - 2) 위탁계획
위탁구간 : 양산시 상북면 홍릉사 계곡 일원
인 원 : 5명/일
운 영 : 하절기 행락철(7~8월) 기간 한시적 운영
 - 3) 위탁사유
- 하절기 홍릉사 계곡의 행락객 및 피서객이 매년 증가하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각종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
- 불법 주·정차단속 및 교통지도, 계곡 내 쓰레기 투기 단속 업무 등을 민원발생하기 전에 현장에서 즉시 계도·처리하여 행락객 및 피서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4) 위탁내용
-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갯길주차 및 주차장 외 주정차 질서유지
- 계곡 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청결유지 등

5) 위탁과정

① 위탁계획 수립 및 업체 모집

사업비 내에서 규모, 과업지시 내용 등 행락철 홍릉사 주정차 지도업무 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위탁업체 모집

②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주·정차 질서유지 등 교통질서유지 가능 협회 및 단체

6) 위탁효과

- 행락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즉시 처리함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상시근무에 따른 주정차 질서 유지 및 깨끗한 유원지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제공
- 행락철 기초질서 등 과도한 규제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을 현지 즉시 계도로 사전예방
- 교통지도·쓰레기 투기단속 등에 대한 계도 활동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에 기여

나. 관련근거

-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1) 위탁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 : 2019년 6월
- 2)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2019년 6월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 환경관리과

- 양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연접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산업단지내 각종 유출사고, 화재 등의 유해물질과 초기 우수의 하천 유입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연계처리 및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연번	구분	사유	재산규모	추정가액 (천원)	비고	페이지
계	취득		토 지 : 2필지(3,663㎡) 건 물 : 1동(2,292.7㎡) 기 타 : 공작물(8,300㎡)	1,741,756 527,741 6,000,000		
1	취득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토 지 : 2필지(3,663㎡) 건 물 : 1동(2,292.7㎡) 기 타 : 공작물(8,300㎡)	1,741,756 527,741 6,000,000	환경 관리 과	5p

- 소관위원회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안이유

기금운용의 공공성 유지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을 별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수립·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 규모(안) - 통합관리기금 외 12종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계	33,219,400	계	33,219,400
· 전 입 금	9,009,551	· 비용자성사업비	5,401,069
· 보 조 금	16,440	· 용자성사업비	30,000
· 융자금회수	30,900	· 인력운영비	0
· 예탁금원금회수	12,061,703	· 기본경비	0
· 예치금 회수	11,183,287	· 예 탁 금	0
· 이자수입	735,375	· 예 치 금	27,260,887
· 기타수입	182,144	· 차입금원리상환	0
		· 예수금원리상환	493,329
		· 기타지출	34,115

나. 2018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7년도 말 현재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 말 현재액	운용 부서
		수입액	지출액	증감액		
계	44,027,058 (27,674,403)	9,974,410 (9,729,072)	5,958,513 (5,465,184)	4,015,897 (4,263,888)	48,042,955 (31,938,291)	
통합관리 기금	16,352,655	245,338	493,329	△247,991	16,104,477	기획관
재정안정 화기금	0	4,054,346	0	4,054,346	4,054,346	기획관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	108,362	12,482	30,000	△17,518	90,844	일자리 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0,192,860	2,060,000	2,148,180	△88,180	10,104,680	일자리 경제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	1,739,246	917,090	781,120	135,970	1,875,216	자원 순환과
자활기금	1,738,826	142,460	30,000	112,460	1,851,286	주민생활 지원과
장애인 복지기금	533,024	7,705	118,760	△111,055	421,969	사회 복지과
지역문화 진흥기금	1,642,707	24,452	55,000	△30,548	1,612,159	문화 관광과
체육기금	2,253,848	33,879	118,512	△84,633	2,169,215	체육 지원과
재난관리 기금	8,852,309	2,372,031	1,895,970	476,061	9,328,370	안전 총괄과
육외광고 정비기금	361,271	21,948	214,000	△192,052	169,219	건축과
투자유치 진흥기금	15,769	250	6,000	△5,750	10,019	투자 유치과
식품진흥 기금	236,181	82,429	67,642	14,787	250,968	위생과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금액임.

다.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

- 소관위원회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159회 정례회

■ 심의안건

1.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33
2.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p.33
3.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p.34
4.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지정 및 지원 조례안 ← p.34
5.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6.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공기관)위탁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15.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7.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시립이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9.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3.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24.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양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협력 협약 동의안
29. 2019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동의안
30. 양산시 숲에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1.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34.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동의안
35.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3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37.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38.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9.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40.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2.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
44.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동의안
45.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46.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양산시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48.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49.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안
53.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5.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6.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7.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1.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63.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64.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5.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6.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8.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 나.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제6조)
- 다. 인구교육, 인구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라.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제14조)
 - 1) 구성인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2) 위 원 장 : 부시장
 - 3) 부위원장 : 인구정책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 4) 당연직 위원 : 출산·보육·노인복지·일자리 업무 관련 담당과장
 - 5) 위촉직 위원
 - 가) 양산시의원
 - 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교수 및 전문가
 - 다) 인구정책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 라) 그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 마. 인구정책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황산캠핑장 및 황산공원 미니기차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신규 위탁 사업을 명시하여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위탁사업 신설(안 제19조)
- 황산캠핑장 및 황산공원 미니기차 관리 및 운영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청렴조사과-1734(2018. 4. 20.), 경제제도개선과-2687(2018. 10. 18.)}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조문체계 정비

■ 주요내용

- 가.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안 제2조, 제3조의2)
- 나. 연구용역 과제 선정의 사전 실무 검토 강화, 유사·중복 과제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 강화, 중·장기 발전계획 연계 방안 검토(안 제3조의2)
- 다. 용역실명제 도입(안 제13조)
- 라. 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공개 의무화(안 제15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본 조례 제정이후부터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어 상설 운영 필요성이 없는 실정임. 이후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 해당 사안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설위원회인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시에 구성 운영토록 관련 조문 개정(안 제12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물금읍 동부·신기·가촌마을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 적합한 마을명을 부여하고자 함. 물금읍 동부마을 및 서창동 동부1·명동2마을은

택지조성 및 아파트와 자연마을의 이질감으로 인해 행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 적합한 마을명을 부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마을정수 조정 : 시 전체(289개 → 297개 마을로 조정)
- 물금읍 54개 마을 → 60개 마을
(물금리 6개 → 8개, 가촌리 16개 → 20개)
 - 서창동 22개 마을 → 24개 마을
(삼호동 13개 → 14개, 명동 6개 → 7개)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남권의 생명특화단지 조성 및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연계한 양방향노화산업 추진기구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진행중인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 한시기구명 : 양방향노화산업국
 - 존속기한 변경 : 2018. 12. 31 → 2019. 12. 31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남권의 생명특화단지 조성 및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연계한 양방향노화산업 추진기구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진행중인 대형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 한시기구명 : 양방향노화산업국
 - 존속기한 변경 : 2018. 12. 31 → 2019. 12. 31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공기관)위탁동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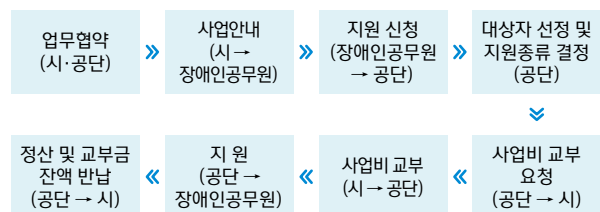
■ 제안이유

양산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1) 위탁사무 :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 우리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 : 38명(중증 1명, 경증 37명)
- 2) 위탁금액 : 20,000천원
- 3) 위탁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에 의거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 4) 위탁내용 :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및 지원, 교부금 정산
- 5) 위탁기간 : 2019. 1 ~ 2019. 12(1년간)
- 6) 추진절차



나. 위탁효과

- 1) 장애인공무원이 지원 신청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에 대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이 평가하도록 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임
- 2) 전문기관에서 검증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가능

다. 관련근거

-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 2)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근로지원인의 배정등),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등)
- 3)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3633(2015. 9. 8.)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제공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신설) 협조」 표준안 배부

- (안)제0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가) 지정한다.

라.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협약 체결 : 2019. 1.
-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2019. 2.
- 사업비 교부 및 지원 : 2019. 2.
- 교부금 정산 : 2019. 12.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제안이유

2019년도 양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40,515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나. 출연기한 : 2019년 3월 31일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2013. 3. 23 개정되어 법 제91조에서 규정한 '양산시 지명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 위원의 직무등에 관한 지명의 조사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제정안	수정안
제1조 (생략)	제1조 (제정안과 같음)
제3조(구성)①-----	제3조(구성)①-----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산시장이 되고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1. 관계 공무원	1. (제정안과 같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2. (제정안과 같음)
한 사람 중 3명 이상	
제4조~제7조 (생략)	제4조~제7조 (제정안과 같음)
부칙 (생략)	부칙 (제정안과 같음)

양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18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제안이유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

자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위탁기관(단체)을 선정·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1) 위탁사무 : 양산시 휠체어택시 위탁 운영
- 2) 위탁기간 : 5년
- 3) 위탁재산 : 휠체어리프트 설치 차량 3대
- 4) 소요예산 : 92,774천원/연

나. 주요위탁내용

- 1) 위·수탁 범위 :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 2) 수탁자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양산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복지법인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단체
 -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체
- 3) 수탁자 결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
- 4)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세부운영 사항을 정비하고,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18년 12월 준공 예정인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조문 신설
(안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제19조 ~ 제26조)
- 나. 2017. 3. 14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 추가하여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 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개선
- 다. 법령과 중복되는 문구 수정 및 부적절한 용어 삭제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시립이팝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제안이유

기존 수탁자와의 재위탁기간이 2019년 6월 14일자로 만료되는 시립이팝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시설현황

(단위 : m², 명)

시설명	소재지	수탁자 (원장)	보육실 면적	정원	보육 교직원	시설
시립이팝 어린이집	양산시 덕계7길 26 (웅상종합사회복지 관내)	김미선	294	39	9	

나. 주요위탁내용

- 1) 위탁구분 : 변경위탁 「재위탁 기간 만료 (2019. 6. 14)」
- 2) 위탁기간 : 5년
- 3)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전반
- 4)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5) 위탁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6)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7) 심사방법 :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의 정비 및 법 규정을 재기술한 단서조항의 삭제, 팀제의 실시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4조의2)
 - '2019년 1월 5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나. '기금의 운용기한'을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개정(제4조의2)
- 다. '다만' 이하의 단서조항은 법 규정을 재기술한 것으로 삭제(제4조의2)
- 라. 팀제 실시에 따른 일부조항 개정(제6조제7항, 제10조제1항제2호)
 -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변경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복합문화타운 준공예정에 따라 기존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문화예술시설로 제명을 변경하여 양산복합문화타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일부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개정
 - 1) 당초 : 「양산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 변경 :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나. 시설명칭 변경(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 '문화예술회관(또는 회관)'을 '문화예술시설'로 변경
- 다. 시설 추가에 따른 사용시설 범위 정비(안 제4조)
- 라. 시설 사용 허가제한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안 제6조)
- 마. 예식장으로 사용가능한 공연장 추가(안 제8조)
- 바. 사용료 특례 및 감면 변경(안 제9조)
 - 영화상영 목적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특례 삭제
 - 사용료 감면 기준 조항 추가(시행규칙→조례로 규정)
- 사. 사용료 납부 규정 변경(안 제10조)
- 아. 원상회복 규정 추가(안 제14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을 위한 복무 등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시설명에 맞춰 시설장에 대한 명칭 수정(안 제9조, 안 제25조)
 - 관장(소장) → 관장(센터장)
- 나. 관장(센터장)에 대한 직무대행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 관장(센터장)의 직무대행을 청소년업무담당팀장이 하도록 규정
- 다.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안 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라. 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을 위한 복무 등과 관련된 조문 삭제(안 제12조~제13조, 안 제31조~제32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상시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자 신청자격	수탁업체
총 6 건	389,000			
시민평생교육원	180,000	2019. 3. ~ 12.	양산시 소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분원포함)	미정 (공개모집)
평생학습마을 학교	98,000	2019. 3. ~ 11.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단체·평생교육기관으로 최근 3년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어야 함.	미정 (공개모집)
양산온누리 학습교실	27,000	2019. 3. ~ 11.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단체·평생교육기관으로 최근 3년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조사업 수행실적이 2회 이상 있어야 함.	미정 (공개모집)
진로지도사 자격과정	24,000	2019. 3. ~ 11.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단체·평생교육기관	미정 (공개모집)
드론교육과정	20,000	2019. 3. ~ 11.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관련 비영리 법인·단체·평생교육기관	미정 (공개모집)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40,000	2019. 3. ~ 11.	양산시 소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분원포함)	미정 (공개모집)

나. 수탁자 선정 일정(공개모집)

- 2019. 1. 25. : 양산시 평생학습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 모집 공고
- 2019. 2. 8. : 공개모집 마감
- 2019. 2. 22. : 양산시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위탁사업자 심의·선정)
- 2019. 2. 28. : 위탁사업자 협약체결 및 공증

다. 수탁자 선정 일정(공개모집)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상시적·효율적 제공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 및 평생학습 도시의 위상 제고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근거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 사업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체육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체육진흥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라.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고 및 감사(안 제8조)
- 마.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5조)
- 바. 양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제2조)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시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과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대상 중 다 자녀가정 구성원의 정의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가정 구성원에 대한 정의 변경(안 제27조제1항제7호)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북다목적구장, 삼수권역체육공원, 감결생활체육공원, 하북체육공원 풋살장, 웅상체육공원 궁도장 준공 등에 따른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편의 제공, 관내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물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 추가 및 변경(안 제3조, 별표1)
 - 상북다목적구장, 삼수권역체육공원, 감결생활체육공원, 하북체육공원(테니스장→풋살장), 웅상체육공원 궁도장
- 나. 운영위탁 가능한 체육시설 추가 및 부존재 체육시설 삭제(안 제18조제2항)
 - 시설물 대상 추가 : 상북다목적구장, 삼수권역체육공원, 감결생활체육공원
 - 시설물 대상 삭제 : 웅상운동장
- 다. 사용료 부과 체육시설 신설 [안 제10조(별표2~별표3)]
 - 사용료 대상 추가 : 삼수권역체육공원, 하북체육공원 풋살장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 주민등록자에 한해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제한 규제 삭제
 - 연간 150여명 정도 출산장려금 수혜 제외자 구제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양산시 이미지 제고 및 적극적 행정 구현
- 나. 재혼가정, 입양아, 사망자녀 등 자녀수 산정에 따른 혼란 방지
 - 출생아 순위 확정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가. 사용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정비(안 제3조)
- 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5조)
- 라. 지원대상 정비(안 제6조)
- 마. 지원내용 정비 및 신설(안 제7조)

- 바. 지원신청 정비(안 제8조)
- 사. 지원절차 정비(안 제9조)
- 아. 대장관리 정비(안 제12조, 별지 4호 ~ 별지 5호 서식)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전시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박물관 관람시간을 조정하고, 유물 수집 시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자 수집유물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유물 취득 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존의 순수기증(무상기증)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 오전 9시 30분부터로 변경 (안 제6조)
- 나. 유물의 기증·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함 (안 제22조)
- 다. 유물의 검증 절차 신설 (안 제22조의2)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9시 -----

양산도서관 건립 연계협력 협약 동의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 및「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의거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협약체결 사항에 대하여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공공도서관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양산도서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협약대상 :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 나. 건립개요
 - 위 치 :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3-2
 - 사업기간 : 2018. 1. ~ 2021. 2.(개관 : 2021. 3.)
 - 건립규모 : 부지 4,000㎡, 연면적 3,300㎡(지하1층, 지상3층)
 - 사업비 : 9,838백만 원
- 다. 예산지원 : 1,000백만 원
- 라. 참고사항
 - 양산도서관 사용기간('15. 4. 3. ~ '20. 4. 2.) 만료에 따라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 우리시는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교육청 소유 공공도서관이 없음.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9년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역량강화 및 자질함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교양 함양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1) 위탁업무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거 양산시 2019년 「양산 인문학과정」 운영
 - 2) 위탁기간 : 2019년 3월 ~ 11월
 - 3) 위탁금액 : 35,000천원 (시비 24,500천원, 교육생 10,500천원)
 - 4) 수탁자격 : 양산시 소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5) 위탁내용
 - 교육기간 : 2019년 4월 ~ 11월
 - 교육대상 : 35명 (지역화합과 교양함양에 관심이 많은 양산시민)
 - 교육장소 : 위탁기관 강의실 및 현장 연수지
 - 6) 선정 및 심사방법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양산시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합계		100
사업의 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0) · 사업계획의 창의성(10) · 사업의 지역사회 파급효과(10)	60
사업 운영능력	· 운영인력 확보등 종합운영능력(20)	20
사업의 예산	· 사업비의 타당성(10)	10
위탁사업 수행경력	· 최근 3년내 사업수행 실적(10)	10

- 위원장(부시장)외 7인(위촉직)으로 구성된 양산시사무수탁기관 선정 위원회가 사무수탁기관 공모 기관중 수탁기관을 심사 및 선정

※ 심사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나. 위탁효과

- 1) 교육기간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 도모
→ 교양함양과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가 양성교육 목표 달성에 부합
- 2) 다양한 교수진 및 외래초빙 강사 활용
→ 개인역량 강화 및 상호협력과 소통의 기회 확대를 통한 개인 자질 함양

다. 향후 추진계획

- 위탁기관 위탁협약체결 및 교육생 모집 : '19. 3월
- 「양산인문학과정」운영 및 수료식 : '19. 4월 ~ 11월
- 정산 및 결과 보고 : '19. 12월

■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숲에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자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에서'의 준공 예정에 따른 본 시설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위칙, 관리·운영의 일반원칙(안 제1조~제2조)
- 나. 숲에서 시설사용료, 예약, 시설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숲에서 시설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라. 숲에서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계획 예고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 개설계획 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신청기한 변경(안 제13조의 2)
- 당초 : 대규모점포 등 개설 시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 변경 : 대규모점포 개설 시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가결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소상공인 육성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소상공인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유예기간 설정(안 제10조제4항)
제1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은 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신청 할 수 있다.
- 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21조의2)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조성된 주차장의 위탁계약이 만료(2018.12.31.)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상인회에 재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개요
시설현황

구분	위치	규모	주차대수	비고
남부시장 주차장	주차장	장터3길 7	1,378㎡	111대
	고객편의 시설		97㎡	- 카페, 지역우수 상품 전시장
남부시장 시민주차장	A 주차장	서일동로 35	480.7㎡	21대
	B 주차장	장터4길 3	743.1㎡	23대
북부시장 주차장	북부동 147-36		1,365㎡	42대

나. 주요 내용

- 1) 위탁기간 : 2019.1.1. ~ 2021.12.31.(3년)
- 2) 위탁내용 :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3) 위탁비용

주차장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비용 일체를 주차장 수익금(주차요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에 예치

※ 근거 :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제9조

4) 수탁자 선정

- 남부시장 주차장(고객편의시설 포함) : 양산남부시장상가 상인회
 - 남부시장 시민주차장(A·B) : 양산남부시장 번영회
 - 북부시장 주차장 : 양산북부시장 번영회
-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다.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
-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라. 향후계획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18. 12월.
- 수탁시설 운영 : '19. 1월.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우리 시는 제조업체가 23백여개 있고 이러한 제조업은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및 기술 자립화와 자동차, 조선경기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내 과기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산업 R&D 및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위탁 시행코자 하며, 사업비는 도비 지원을 받아 연간 3억원(도 1.2 시 1.8) 5년간 총 15억원(도 6, 시 9)으로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1) 위탁업무 : 양산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기술고도화 사업 (소재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2) 사업내용 :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지원
- 3)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년)
- 4) 추진방법 : 공공관대행사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산센터)
- 5) 사업비 : 1,500백만원(도비 600 시비 90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9	2020	2021이후
합계	1,500		300	300	900
도비	600		120	120	360
시비	900		180	180	540

※ 2018년 100백만원(시비) ⇒ 2019년 300백만원(도비확보 사업확대 시행)

- 6) 위탁내용 :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R&D 및 시제품제작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7) 수탁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나. 추진효과

- 1) 중소기업의 단순 가공 기술로는 시장경쟁에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의 부족한 R&D 분야를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부품에 대한 표면 또는 열처리 등 소재 고급화
- 2)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기업으로 육성

다.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2)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중소기업 고도화 지원)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제안이유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센터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코자 제안됨.

■ 주요내용

-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첨단하이브리드생산 기술센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 재산 및 사용 목적

재산의 표시				비고
건 물 명	소재지	사용면적	사용목적	
첨단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	양산시 중앙로 33-1	3,298㎡ (지하3층, 지상3층)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활동 수행	

- 사 용 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양산센터
- 허가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4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 제안이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동남권 주력산업인 소재부품 기술 고도화를 위해 우리 시에 유치한 정부출연 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출연금 : 480,000천원
 - 센터 운영비 : 200,000천원
 - 센터 및 장비 이전비 : 280,000천원
- 나.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다.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제3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 제안이유

-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함.
- 나. 의결 요청 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 주요내용

- 가.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 나. 출연의 필요성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위변제 증가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확충 시급 및 보증 공급 여력 부족
 - 양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
- 다. 출연의 대상 및 출연금
 - 출연의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출연금 : 2억원
 - ※ 2018년도 : 2억원 2017년도 : 2억원, 2016년도 : 2억원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운영 중이던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잘못된 관계법령 인용조문 삭제(안 제1조)
-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3조)
- 다.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 일부 변경 및 추가(안 제5조, 제6조의2)
라. 화학사고 주민고지 사항 추가(안 제12조의2)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18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10조)
- 나. 상위법령 불일치 및 전출관련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1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의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하고 「환경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을 원활히 하며, 일부 축종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농가의 축산경영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조문 용어 정비
(안 제2조의2제1항 [별표1 5호], 제2조의2제2항제4호, 제2조의2제3항)
- 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안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일부 축종변경 가능(안 부칙 제2조제3항)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안이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인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제7조)
- 다. 협의회의원원의 활동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1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제정안	수정안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6조(협의회 구성) ① ----- 공동회장(이하 '회장'이라한다) 4명-----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동회장 등) ① 협의회 공동회장은 시민·기업·행정을 대표하는 3명으로 하되, 시민·기업의 대표는 위촉직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의 대표는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② 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두되, 회장은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공동회장 중 1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장 등) ① ----- - 회장은 시민·기업·의회·행정을 대표하는 4명으로 하되, 시민·기업·의회----- ----- 부시장----- ----- <삭제> <삭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을 확대함으로써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저공해 조치대상자동차 용어 수정(안 제3조제1항)
- 「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정

- 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대(안 제3조제1항)
- 제3조제2호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삭제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1) 위탁대상 : 공중화장실 99개소
- 2) 위탁내용
 - 화장실 청소 및 청결관리
 - 인건비 및 물품(휴지, 쓰레기봉투 등) 구입·관리
 - 소규모 시설수리(수도꼭지, 전구 등)수선 등
 - ※ 청소관리비용을 월별 근무 및 물품구매 실적에 따라 위탁관리비 지급.
- 3) 위탁 용역비 : 443,421천원
- 4) 위탁기간 : 1년(2019. 1. 1. ~ 12. 31.)
- 5) 수탁자격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를 득한 자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민간위탁동의안

■ 제안이유

행락철 내원사 계곡을 찾아오는 행락객에게 편의 제공과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민간 위탁운영 사업을 추진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1) 위탁사무 :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 2) 위탁금액 : 25,000천원
 - 3) 위탁계획
 - 위탁구간 : 내원사계곡
 - [우정빌라 앞 ~ 내원사 매표소까지(2.5km 정도)]

- 인 원 : 7명/일
- 운 영 : 하절기 행락철(7~8월) 기간 한시적 운영

4) 위탁사유

- 하절기 내원사 계곡의 행락객 및 피서객이 매년 증가하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취사, 공원구역 내(계곡)에서의 물놀이 등으로 각종민원이 늘어나고 있음.
- 불법 주·정차단속 및 교통지도, 취사, 야영행위 금지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계곡 내 쓰레기 수거로 청결관리 업무 등을 민원발생하기 전에 현지에서 즉시 계도·처리하여 행락객 및 피서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5) 위탁내용

- 교통지도, 취사, 야영행위 금지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지도)활동
- 공중화장실 청소(관리기간 중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 계곡 내 쓰레기 수거 등 청결관리 등

6) 위탁과정

- 위탁계획 수립 및 업체 모집
사업비 내에서 규모, 과업지시 내용 등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 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위탁업체 모집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행락질서(야영, 취사행위 등)계도 및 주·정차 질서유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수거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나 협회 및 단체

나. 위탁효과

- 행락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상시근무에 따른 쾌적한 유원지 관리 및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제공
- 행락철 기초질서 등 과도한 규제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을 현지 즉시계도로 사전예방
- 교통지도·취사·야영행위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에 기여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18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10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요건과 불 부합으로 인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다자녀가정의 요건을 정비코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요건 정비

[안 제29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1항 제8호]

- 당초 :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세 번째 자녀가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의 경우: 50%
- 변경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50%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산림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부족, 단기고용·저임금 등에 따라 안정적 일자리로의 정착에 한계가 있어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17~'18년도에 이어 『숲해설 운영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추진현황

- '16년 까지 : 숲해설사 직접 고용
- '17. 3. ~ 11. : 2017년 숲해설 운영 사업 위탁 시행
- '18. 3. ~ 11. : 2018년 숲해설 운영 사업 위탁 시행

나. 위탁개요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배치시설 및 배치기준

시 설 명	위 치	대상	운영기간	배치기준
계	2개소			
대운산 자연휴양림	탐골길 208-124 (대운산휴양림 내)	전체	봄~가을	숲해설가 2인
북정 숲체험장	북정동 35 (북정9근린공원 내)	"	"	숲해설가 1인

- 위탁사무 : 숲해설 운영 사업 위탁

- 위탁금액 : 49,924천원

(국비 24,962천원, 도비 7,488천원, 시비 17,474천원)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수탁자격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
록한 자

- 모집방법 및 계약방법 : 공개모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추진효과

- 숲체험원 및 숲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림복지전문(숲해설업)의 다양한 숲해설·숲체험 프로그램 등 산림교육 전문성 제고

- 숲해설가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성 확보

라. 관련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마.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 '19. 2.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19. 2.

- 계약체결 및 사업 시행 : '19. 3. ~ 11.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

■ 제안이유

산림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부족, 단기고용·저임금 등에 따라 안정적 일자리로의 정착에 한계가 있어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에 따라 '18년도에 이어 『유아숲교육 운영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추진현황

- '17. 3. ~ 11. : 유아숲지도사(1명) 직접 고용
(대운산 유아숲체험원)
- '17. 3. ~ 6. : 가촌·춘추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시행
- '18. 5. ~ 11. :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위탁 시행

나. 위탁개요

- 양산시 유아숲체험원 현황

시설명	위치	대상	운영기간	배치기준
계	3개소			
대운산 유아숲체험원	탐골길 208-124 (대운산휴양림 내)	유아	봄~가을	유아숲지도사 1 보조교사 1
가촌 유아숲 체험원	물금 가촌 1312-4 (디자인공원 내)	"	"	"
춘추 유아숲 체험원	교동 157-42 (춘추공원 내)	"	"	"

- 위탁사무 :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위탁
- 위탁금액 : 149,600천원
(국비 74,800천원, 도비 22,440천원, 시비 52,360천원)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수탁자격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
록한 자
- 모집방법 및 계약방법 : 공개모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추진효과

- 민간시장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전문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등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라. 관련근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지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마.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 '19. 2.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19. 2.
- 계약체결 및 사업 시행 : '19. 3. ~ 11.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가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부서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담당 업무 분장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연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가동기준 정비(안 별표 3)
- 나.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담당 업무 분장 정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변경에 따른 조항 신설 및 명칭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나. 사회재난 원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 제5조)
- 다.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안 제6조)
-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 마. 항목 신설에 따른 조항 및 명칭 정비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자치법규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관련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 데도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 및 행정현장에서 잘못된 집행을 하게 될 우려 발생을 해소.

■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방법 삭제(제7조 제5항)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산시민(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에 대해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시민안전보험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안 제3조)
- 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4조)
- 라. 시민안전보험의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안 제6조)
- 마.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안 제8조 및 안 제9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건축물 규모 제한 사항을 완화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대형건축물(주거복합건축물) 입지에 따른 문제점 예방과 상업기능 강화를 통한 상업중심 기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연면적 규제사항 완화(안 제39조 및 안 제41조 삭제)
- 나. 일반상업지역 내 대형건축물(주거복합건축물) 입지에 따른 문제점 예방과 상업기능 강화를 통한 상업중심 기능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차등 적용(안 제60조제8항, 별표26)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제안이유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원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제사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과 2016년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가산일반산업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인 경계선 관통대지가 발생하여
- 법령기준에 부합한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인접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해소와 도시의 체계적인 계획·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1)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물금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평산동, 덕계동 일원	70,867,849	감)4,246	70,863,603	

2)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 (km ²)	편입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변경후	
				-	70,867,849	감) 4,246	70,863,603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19.61	4,119,000	-		4,119,000	
		동면	56.35	46,632,423	감)3,617		46,628,806	
		상북면	68.47	6,250,000	감)1		6,249,999	
		하북면	68.65	939,000	-		939,000	
		중앙동	11.91	1,715,795	-		1,715,795	
		삼성동	15.98	4,004,347	-		4,004,347	
		평산동	10.75	6,748,735	감)628		6,748,107	
		덕계동	13.37	458,549	-		458,549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의견제시

안건명 : 양산시관리계획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금회 해제 대상 토지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관통하는 대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누락으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입안사유

- 양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 1) 계획의 범위
 - 2)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3)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 4) 계획의 수립절차
 - 5) 과업의 추진일정
 - 6) 양산시 현황종합분석
 - 7) 양산시 쇠퇴진단
 - 8) 도시재생 기본구상
 - 9) 도시재생권역 설정
 - 10) 도시재생권역별 구상(안)
 - 1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1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절차
 - 13) 행정구역단위 쇠퇴분석
 - 14) 집단단위 쇠퇴분석 및 제외지역 검토
 - 1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검토
 - 1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17)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
 - 18) 종합우선순위 선정
 - 19)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구상(안)
 - 20) 도시재생 실행전략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의견제시

안건명 : 양산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양산시 관내 각 지역의 도시환경, 지역자원,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세부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
- 양산시 도시재생의 성공여부는 계획의 충실한 수립과 더불어 재생 사업의 국·도비 확보와 민간 영역과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된 실행력에 달려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현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양산시 댜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안이유

「댜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부터 제44조에 따른 댜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댜주변지역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
- 나.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제2조 및 제3조)
- 다. 존속기한(제4조)
- 라. 타 법의 준용사항(제5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지원 및 주민교육실시, 현장포럼 계획수립 및 진행,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자문 등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업무를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지원센터 업무의 통합처리 및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업무를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위탁 처리할 수 있게 함.(안 제23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개정 보완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양산시승 공공주택지구 부과대상지역 추가(안 제3조의4호)
- 나.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4조)
- 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조정·보완(별표)
 - 이행여부 검증과 증빙이 어려운 교통량 감축활동 항목 삭제(자전거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대중교통이용지원)
- 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보고서 제출 및 불이행시 조치규정 신(안 제6조, 제11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주차장법 개정(2018. 8. 14)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기계식주차장의 종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능 지역(안 제14조의2 1항 1호)
- 나.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능 건축물(안 제14조의2 1항 2호)
- 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인정대수(안 제14조의2 1항 3호)
- 라. 적용 대상 제외(안 제14조의2 2항)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 장소 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정함(안 제8조)
- 마. 설치 신청 처리에 대한 규정(안 제9조)
- 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2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관내 지역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조성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안 제7조)
- 시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 규정 추가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제안이유

가. 지역 농특산물 전시·홍보 및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나. 2017. 4월 전시판매장 수탁운영자의 경영적자로 인한 조기 사업 포기 이후 2차에 걸쳐 유료 수탁 운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단체가 없어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동의내용 :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위탁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 재산 및 사용 목적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비고
건물명	소재지	사용면적		
양산시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하북면 신평강변7길 12	건축 115.2㎡ 부지 357㎡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 위탁예정 기간 : 2019. 1. ~ 2021. 12.(3년)
- 위탁범위 :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나.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존속기한 명시(안 제4조의2)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농업·농촌 분야별 지원내용
- 나. 지원절차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제정안	수정안
제6조(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략) 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 시책 지원 사업 10. (생략) 11.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12. ~ 13. (생략)	제6조(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 ----- 1. ~ 8. (현행과 같음) 9. ----- 지원 ----- 10. (현행과 같음) 11. ----- 생산·유통 구조개선 ----- 축산분뇨 자원화 및 처리시설 지원 ----- 12. ~ 13. (현행과 같음)
제7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 ----- 1. ~ 3. (현행과 같음) 4. ----- 시장 ----- ----- ----- ----- -----
제9조(지원신청) ① (생략)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후 필요 ----- ----- ③ (현행과 같음)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제안이유

「농업인등의 농가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공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10조)
- 나.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3조)
- 다.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14조~제15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별도 조례 제정에 따른 삭제 : 제6조
(농산물가고지원센터 설치·운영)
- 나. 개정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존) 담당공무원과 시민,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
으로 구성
(변경) 위원장, 부위원장, 기타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
원과 간사1인으로 구성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보호 육성 및 품질 차별화
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가. 농특산물 지정 육성에 관한 정의 및 대상(안 제1조~안 제3조)
- 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4조~제8조)
- 다. 농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 등(안 제9조~제13조)

라. 품질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안 제14조)

마. 예산지원 등(안 제15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기존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적용대상 및 사용품목의
확대로 농가의 수혜범위를 넓히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빠른 대
응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을 특허청에 상표 등
록한 품목으로 확대(제3조의1)
- 나. 별표2 삭제(안 별표2)
- 다. 위원회의 간사 직위 현행화(안 제5조)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가. 수도법시행령 개정('18. 6. 12) 사항 반영 및 인용조항 정비
- 나.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교체공사의 원활한 시행으로 음용물
확대를위하여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함
- 다.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 주요내용

- 가. 요금 등의 감면 대상 추가(안 제38조제6항)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요금의 50퍼센트 감
경) 추가
- 나. 인용조항 정비(안 제38조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7항의 규정
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로 변경
- 다.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40조제4항)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단지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85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도 포함’으로 확대

라. 과태료 관련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단순 재기재 및 미부합 조항 정비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초·중·고등학교와 「유아 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 원 ----- -----.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초·중등교육법</u> 」 제2조 <u>각 호에 따른 학교</u> 와 「유아교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및 시기
- 나. 하수관로 설치 비용 부과 방법 추가
- 다. 공동주택의 하수량 산정기준 추가
- 라.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및 시기
- 마. 원인자부담금 감면 삭제
- 바. 사용료 등의 감면 근거 법령 조문 인용 변경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수정의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감면 등) ① ----- ----- <u>사용료·점용료</u> <u>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u> ----- ----- 1. --- 초·중·고등학교와 「유 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하고 ----- ----- 감경한다.	제25조(감면 등) ①현행과 같음 1. --- 「 <u>초·중등교육법</u> 」 제2 <u>조 각 호에 따른 학교</u> 와 「유아교 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 원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 하고----- 감경한다.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가.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변경
- 나.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에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지명
- 다.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에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은 직제에 맞춰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으로 수정
- 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 조례에 명시
- 마. 공동주택 등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세대별로 산정
-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춰 변경

■ 주요내용

- 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하수담당업무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
- 나. 간사와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
- 다.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변경
- 라. 특별회계 존속기간 2023. 12. 31.까지로 신설
- 마. 세대별로 구분 유량계가 설치된 경우 각각의 이용량에 따라 산정
- 바. 과태료 가산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

■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원안의결

■ 5분 자/유/발/언



제158회 정례회 이종희 의원

김일권 시장님의 포용적인 시정 추진을 기대하며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더 행복한 도시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1,3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시의원 이종희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김일권 시장님의 취임과 제7대 양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초부터 많은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단체들을 만나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공부하신다고 수고도 많으십니다.

김일권 시장님!

저는 김일권 시장님께서 약 10여 년 전 모 산악회 회장 이·취임식

에서 멋진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전임회장과 신임회장을 별에 비유하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떠나는 회장은 지는 별이고 새로 취임하는 회장은 뜨는 별이라고 하시면서 서로가 당기고 밀면서 협조하면 이모임은 최고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축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나 단체의 집행부가 바뀌면 이전과 이후의 모든 것이 단절이 됩니다. 정책이나 가치가 다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난 정권에 대해 무엇을 잘못했는지 수사를 합니다. 임기 동안에 잘못했으면 죄값을 치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순환 되는 나라가 되다보니 항상 내편 네편 찾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선거 때, 본인을 돕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 같이 배척해버립니다.

김일권 시장님!

지난 157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쯤 시장님이 양보해서 9월 정례회 때 다시 조례를 올리든지 아니면 서진부 의장께서 시장님에게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다음 회기에 올리자고 한번이라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사죄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의회를 존중한다 하시고 의장은 야당과 협치한다고 하는 데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복지재단 재단본부장의 임기가 각각 2년과 6개월 남았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호 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에 업무 수행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고문 변호사 선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새로 선임된 고문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예비후보로 있으면서 다른 후보의 임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양산시민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지역 여론상 적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문 변호사는 양산시 고문변호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산시민의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이 뛰어나고 시장님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하더라도 이번 고문변호사 선임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8회 정례회 이용식 의원

도시재생 뉴딜정책 선제적 대응 촉구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양산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최근 신도시 조성, 도시철도 개통 등 도시개발에 힘입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의 중심인 원도심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하거나 특색 없는 상가는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하루가 다르게 경쟁력을 잃어가는 등 도심 공동화와 슬럼화가 진행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원도심인 중앙동의 최근 5년간 인구는 13.1%, 사업체는 10년간 5% 감소하였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7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열악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외연 확장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사업으로 정부는 2017년부터 연간 10조원, 5년간에 걸쳐 총 50조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규모에 따라 적게는 40억원에서 최대 250억원이 지자체에 지원되며 연계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지역 사회 재생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원도심 중앙동을 대상지로 지난 2014년, 2017년에 이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승리는 우연히 올 수도 있지만 실패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점

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의 경우 2016, 2017년에 이어 2018년도 까지 3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대학, 지역주민 간에 도시재생 MOU 체결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아이템을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도시재생업무 부서가 4년 동안 네 번이나 바뀌어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고 전문성이 결여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부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부서 간 역할분담과 함께 원활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따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국비 확보사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8회 정례회 이장호 의원

가칭 양산동부소방서 신설에 관하여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35만 시민과 함께 수고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장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민의 생명 및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양산시에 소방서 추가 신설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자 양산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양산시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산시에는 1개의 소방서가 있으며 6개의 119안전센터가 양산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소방의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 50만 자급



자족 도시를 바라 보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시는 50만 인구에 걸맞게 2개의 소방서가 시민의 생명 및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기준을 보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9조에 관련하여 소방서의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 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 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우리 양산시에는 또 하나의 소방서 신설이 바람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양산지역에서도 웅상지역에 가칭 “양산 동부 소방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웅상지역은 현재 우리 양산시 면적의 13.28% 밖에 안 되지만 인구는 27.5%를 차지 합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인구 밀집도가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두산 1차, 2차, KCC, 서희스타, 우성, 양우 등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들이 준공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현재의 인구 밀집도는 더욱 상승하게 되며 앞으로 웅상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여건 또 한 가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에는 16곳의 산단과 현재 조성 및 계획을 가진 11곳의 산단이 있습니다. 그중 조성되어 있는 16곳의 산단 중 5곳의 산단이 웅상에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11곳의 산단 중 3곳의 산단이 웅상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차 후 웅상에 8곳의 산단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 밀집도나 산단의 조성 상황만 보더라도 웅상 지역에 소방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됨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재난현장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초기 대응과 자원입니다.

얼마 전 웅상 공장화재만 보더라도 신속한 출동을 하였음에도 소방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대형 화재로 이어졌고 타 지역 부산·울산·김해·밀양 지역 등의 지원을 받아 화재를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산단으로 대형 화재로 변질 위험 요소가 웅상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구조, 구급의 소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웅상지역 2곳의 119안전센터 만으로는 증가하고 늘어나는 웅상지역의 소방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 상황입니다.

웅상지역의 1년의 평균 출동 횟수를 보면 화재 220건, 구조 1,443건, 구급 4,218건, 민생지원 96건입니다. 관내 다른 읍·면·동의 출동 횟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 하면 인근 타·시군에서 지원 출동을 나와 주는구나 아니면 물금에 위치한 양산 소방서에서 22km 떨어진 웅상지역으로 지원이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재·구조, 구급은 골든타임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수난 구조 현장에 전문 수상구조 인력 및 장비가 없어, 응급 의료 기관으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있지만 구급차량이 없어, 우리 시민의 재산이 화재로 인해 불타고 있는데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는 소방차량이 부족 하여 우리 양산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소방의 역할은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은 물론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가칭 “양산 동부 소방서”를 신설 하여 웅상지역 뿐만 아니라 동면·양주동 그리고 개발 중인 사송 신도시에 입주 할 약 4만 명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소방서비스와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방서 신설이 우리 양산시의 행정업무는 아니지만 양산시민, 시의회, 양산시 그리고 경상남도가 양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분들이 소방서 추가 신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158회 정례회 최선호 의원

양산시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 방호 대책 마련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최선호 입니다.

본 의원은 양산시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의 방호(防護)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경북 봉화군에서 있었던 끔찍한 엽총 난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분을 식이지 못한 민원인의 총기 사용으로
2명의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였고, 이 사건은 묵묵히 제 자
리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던 전국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까지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비단 봉화군만의 문제였습니까? 최근 우
리시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악성민원인의 아찔한 칼
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청사, 주요시설 또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인구가 급증하여 35만 명의 중견도시로 성장하였습니
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악성 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
한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양산시의 공공청사와 주요시설
의 안전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유아부터 노인, 임산부 등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보건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무섭지만 보건소에 칼을 든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
면 어떨까요? 보건소에 어떤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보건
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특성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대
다수의 직원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보건소는 청원경찰이
꼭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곳의 안전은 보장되었나
요? 본 의원은 얼마 전 물금 신도시 정수장을 방문했습니
다. 도로에서 보면 담벼락이 너무 낮아서 본 의원도 쉽게 뛰
어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한 명의 청원경찰이 근
무하고 있지만 국가주요시설 다급에 해당하는 시설인 정수
장도 완벽하게 보안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구 8만의 김제시는 청원경찰의 수가 62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6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
서 말한 보건소와 정수장의 사례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
다. 최근 우리시에서도 난폭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공무원
의 신변보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시설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강화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원경찰 임용시 신체조건과 유사경력, 상급 무도단종 등
직무수행 능력 검증을 철저하게 하여 시설방호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실제 채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근무 중
인 청원경찰에게는 사건 발생시 숙지된 매뉴얼에 따라 빠르
게 상황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무교육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13조 직무교육에 따르면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강화교육을 통하여 청원경찰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원경찰은 우리시의 수문장으로서 공공시설의 방호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과 능력이 강화된다면 공무원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35만 양산 시민들에게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의 강화된 방호 대책 마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8회 정례회 **곽종포** 의원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곽종포**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전국을 대표할 만한 매실, 딸기, 미나리, 사과, 당근 등 특산물이 아주 많습니다. 고로쇠 축제, 매화 축제, 미나리 축제, 사과 축제 등이 해마다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그 지역에서 땀 흘리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우리 소규모 농가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질 좋은 특산품이 유지될 수 있었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마을 주변의 음식점, 카페와 같은 서비스 업종은 호황이지만 소규모 농가들의 생산 환경과 현실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느 원동매실 작목반에는 70대 어르신이 최연소 농가입니다. 귀촌 귀농은커녕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로 매실 농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매실 수확기에 가격은 경매 시세를 감안하여 kg당 2,000원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을 지경입니다.

그나마 좀 남기려고, 매실 장아찌를 만들어 도로변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 식품 제조·가공, 판매행위 모두 식품위생법상 불법입니다.

소규모 농가가 단순 생산만 하기에는 단가가 낮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조·가공을 같이 하여 부가가치를 올리려 하더라도, 평생 농사일만 하던 사람들이 제조, 가공, 판매를 위한 복잡한 행정상 절차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농가의 사정을 알기에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2014년에 이미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지금껏 소규모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조례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몇 가지 관련하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에는 관계공무원과 시민, 전문가를 포함하여 20여명 이내의 위원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그밖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점을 반영하고 개선시킬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심의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제조 가공을 할 경우에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들고 와 우리 시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매실 장아찌와 같이 위생 안전의 우려가 적은 단순가공, 발효식품 등에 관하여는 좀 더 완화된 시설기준을 만들어 소규모 농가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일반 식품가공업과 별도로 등록 관리하여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얼마 전에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선도적인 지자체에서는 이 센터를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설비에 대한 부담 없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고 제조 시설 확보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련 규정을 컨설팅 하여 소규모 농가가

무사히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법적, 제도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이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과 조례의 기능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본 의원과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가들도 함께,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8회 정례회 임정섭 의원

농민수당제 신설 관련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정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민수당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장주도의 정책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문화·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개방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농업은 반강제적으로 개방화되었고 개방화에 준비되지 않은 국내 농업은 농산물 가격 폭락 및 농산물가격 불안정화가 일상이 되고 있어 농민들은 농사만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의 경쟁력은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농가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 및 농가를 되살리고, 기존 재정투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제도” 도입을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으며, 중앙 및 여러 자치단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의 그 누구도 농업·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 가치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들의 삶의 뿌리이며, 환경생태계와 전통을 계승, 보존하는 핵심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해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촌·농업을 살리기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재정투입방식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가 있어 최근 농가단위, 농민단위, 농촌단위의 “농민기본소득제” 모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농업·농가에 투입되는 재정을 효율과 성과의 측면에서 벗어나 공익과 배려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진군의 경우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있고 1,000㎡ 이상 농사를 짓는 7,100호 농가에 일 년에 7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이른바 “논밭경영안전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형태는 3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5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인정하고 공익적 측면을 인정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뽕 먹고 알 먹고 등지 털어 볼 땀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산시장이 제출한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과 잘 조화를 이룬다면

친환경 농업의 발전, 농가소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시정 목표인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 동일한 행정을 펼친다면, 변화의 구호는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후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부디 의식의 전환을 통해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 중심으로 농업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가를 지키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누구나 그 옳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며, 의지 또한 부족해보입니다.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망설임으로 우리시 행정이 주저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농가는 더 깊은 어려움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부디, 농촌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진심어린 손길을 내밀어 줘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58회 정례회 김태우 의원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실시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 태 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 실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은 양주동, 동면, 물금읍과 같이 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으로 아파트 인근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지역 대부분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상가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많고 주차장은 부족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가 영업자 입장에서조차 주차문제로 점심시간 손님들이 방문을 꺼려한다며 매출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경찰서와 협조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근 김해시의 경우 현재 19개소의 주정차 허용구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진주시의 경우 21개소의 주정차 허용구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의 경우 삼성동 3곳, 동면 2곳 등 총 12군데 일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상가는 많고 공용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확대 실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금 가촌리의 경우,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만 622개소에 달하지만, 해당 지역 공용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을 포함하여 2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증산에 위치한 영화관 주변과 양주동 이마트 부근은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며, 주변 식당 주인들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어 상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공용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것 일겁니다.

하지만 적당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단시간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크기의 주차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해당 구간을 포함한 식당가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주차난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식당도 매출 증대의 효과를 누려 지역경제(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환경이 여러 분야의 불황으로 장기간 저성장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게 운영의 어려움과 경기 침체로 인한 음식점 등 상가의 폐업과 개업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 상권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상가 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만 단기간 추진하기 어렵지 않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상가지역 점심시간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실시 할 것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8회 정례회 정숙남 의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대해 양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 양산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 숙 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우리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은 실제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할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미 대구는 공공기관 추가유치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울산과 전북은 대응 TF팀 구성을 완료하였고,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유치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122개 공공기관에 5만 8천 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작게는 100여명, 많게는 1,000명이 넘는 거대한 기관들이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등용 및 일자리 창출,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산 등과 같이 상호 발전도 촉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대 또한 큼니다.

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2004년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이후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 양산은 2004년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쏟았으나,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 11곳의 기관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양산은 단 한곳도 유치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지만, 과거의 경험을 동력 삼아 이번에는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3단계에 걸친 신도시 사업이 최종 준공됨

에 따라 동남권 중심도시로 부상하였으며, 혁신도시의 부작용으로 작용했던 정주여건이 이미 갖춰진 물금신도시의 양산부산대학교 부지가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10년이 넘도록 양산의 가장 중심지에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 개발을 위해서도 이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또한 대통령 지역공약인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도 관련 기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산시는 보다 신속하게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기를 요청합니다.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과 양산시, 양산시의회, 시민 모두가 협력해 필사의 노력으로 준비하고 지금부터 해당기관과 접촉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대학교 유휴부지에 추진할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공약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대학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시 35만 양산시민의 열망으로 행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적했듯이 부산대학교가 부지의 목적의 사용이나 방치로 인하여 양산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줄 것 또한 요청드리며, 본 의원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석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집집마다 웃음꽃이 만발하는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17명의 의원 모두는 양산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밝고 깨끗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9회 정례회 박일배 의원

평산동지역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지중화 촉구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리원전지역과 가까이 있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리원전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운송하기 위한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전자파 등으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웅상지역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도심구간 지중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상지역은 34만5천볼트의 송전선로 두개가 주거밀집 지역을 지나가서 주민의안전과 건강, 재산을 위협하거나 침해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20년이상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34만5천볼트의 송전선로 및 송전탑이 평산동 중심지를 지나고 있어,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가 많은 날에는 송전선로 및 송전탑 주변으로부터 웅웅 거리는 울림소리와 지지지는 소리를 들으며 전자파의 불안감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단위 아파트 지역인 평산동 한 아파트는 3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아이들이 머무는 평산동의 한 어린이집은 마당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진척이 없습니다.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전자파가 안전한가 불안정한가를 따지기에 앞서 아이들이 고압선 밑에서 뛰어 노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살충제인 DDT와 납같은 2B(발암가능물질)등급의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3~4mg 이상의 전자파에 만성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 발달장애, 우울증, 신경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12%, 부산 45.5%, 울산 4.5%에 비해 양산은 3.7%로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으므로 더욱 큰 문제는 양산에는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의 송전선로 및 송전탑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평산동지역을 예로 들면 두개의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주변으로 웅상인구 약 10만명 중 43%인 4만 3천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으며, 웅상지역 15개 초·중·고 중 7개로 46% 차지할 정도로 학교밀집지역입니다.

하지만 양산시와 한국전력은 전자파로 인한 인체 무해론만을 주장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주거지와 학교주변의 송전선로 및 송전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지중화사업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및 송전탑은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심리적으로도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 서울 등 전국적으로 15만 볼트 이상의 송전탑은 도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 이격하여 지중화해 나가는 추세로 단계별 예산책정을 하는 등 각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및 송전탑 주변에 전자파가 낮아 피해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자파의 기준이 전자파 건강피해 연구가 활발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뿐,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면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지중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양산시는 “양산시 전력선 지중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경제·사회적 검토결과 송전선로와 송전탑 지중화는 타당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송전선로와 송전탑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으로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의 지중화가 아닌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지중화를 점진적·단계별로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업은 단지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전선로가 도심 중앙을 가로 지르고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시민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시정방침인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양산시는 비용이 들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평산동지역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9회 정례회 이종희 의원

쓰레기 감량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먼저 양산시가 환경부 주관 한국환경공단 시행의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평가에서 유산폐기물 매립장 운영의 최적화와 주민 참여도 등으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양산시에는 쓰레기와 관계되는 환경기초 시설로서 유산매립장, 바이오시설, 자원 회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산시 인구가 더 늘어남으로써 쓰레기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양산시에서는 합리적인 매립방법과 새로운 매립장 찾아야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산매립장은 2040년이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서울, 경기에서 발생하는 지역 폐기물을 인천에서 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지역적인 문제

가 되기도 합니다.

인근 일본 오사카는 바다 4곳을 매립하여 현재 사업을 마무리 했거나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 연안 바다 매립장소인 이즈미 오츠 기지는 20년 전부터 계획하여 2017년 11월부터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모두 소각되어 재만 들어오기 때문에 매입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의 오염된 물은 충분히 정화하여 바다로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년 약 494만 여 톤에 달합니다. 이 중에 양산시는 2016년 2만3천484톤이었으며, 2017년에는 2만3천958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약 3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2016년에는 45억 원, 2017년에는 51억 원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처리비용도 점차 증가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여러가지 감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대단위 공동주택에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RFID(무선인식)기반 종량제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하여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FID장비의 경우 관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39% 정도 설치하여 36%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반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보급은 올해까지 549대가 보급되어 전체 세대수 대비 0.4%에 불과하여 감량 효과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 예산이 5억 원에 불과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감량목표도 없이 시책 추진이 이루어지다 보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유산매립장내 설치 운영 중인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유효용량이 음식물 일일 60톤, 축산폐수 일일 70톤 등 총 130톤 처리 규모의 시설에 2018년 현재 일일 135톤 규모로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을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500여개 정도 되는 대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는 이 시설로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대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도 이 곳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있어 최선의 해법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시 주거형태의 75%가 공동주택이므로 각 아파트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형·복합 찬기 사용 및 음식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한 음식문화 개선운동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와 함께 수수료 차등 부과 등 경제적 유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양산시 음식물 배출기준치(BAU) 대비 20% 감량을 목표로 적극적인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책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9회 정례회 최선호 의원

동면 석·금산 도서관 신설 촉구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1,300여명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시의원 최선호 입니다.

저는 오늘 동면 석·금산 지역에 도서관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가보고, 현재를 보고자 하면 그 나라의 시장을 가보고, 한 나라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도서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그 나라의 미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시설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시민들의 교양 함양, 그리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양산시에서는 시립도서관, 웅상도서관, 영어도서관, 상북어린이도서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양산도서관



등 5개의 도서관과, 서창동 일대에 추진 중인 서창도서관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OECD 평균 5만명당 1개관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시는 아직 1개의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동면은 3만5천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동면 주민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자가용으로 4km나 떨어진 물금 가촌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마저 바로 가는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한 주민은 2주에 한 번씩 꼭 자녀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도서관에 가려면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쉬는 날에 아버지 차로 가야 합니다. 이 것이 동면의 현실입니다.

공공도서관 설립은 교육시설이 부족한 동면 신도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품격 있는 양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식기반시설입니다.

동면 석·금산 지역은 2020년 완공 예정의 사송신도시와 양주동 일대를 포함한 신도시 주민들의 도서관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점도서관의 최적지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는 60개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작은도서관마다 운영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미숙하다보니 독서저변확대라는 운영목적이 실현되지 작은도서관은 주민친화적 도서관 환경 구축과 독서저변을 확대하고 독서생활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공간입니다. 이에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이고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과 운영자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하고 다문화, 장애인, 맞벌이 가정 등 정보취약 계층도 동등하고 풍족한 교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도서관은 찾아가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위한 특색있는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은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걸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도서관에서 수준높은 양질의 문화·교양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시의 미래 또한 더 기대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이라는 문화혜택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양산시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정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9회 정례회 정숙남 의원

近者悅遠者來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주택
밀집지역 쓰레기 배출 방법 개선 촉구 —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 숙 남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과의 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15일, 원도심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전략 수립 주민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역 여건과 효과를 고려해 남부시장, 북부시장, 서창시장, 신평시장 4곳이 예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모두가 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권을 살려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장활성화를 통해 배후지에 인구 극대화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쯤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近者悅遠者來 (근자열 원자래)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에 문제가 있었으니, 백성들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나 인구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제후 섭공이 공자에게 “천리장성을 쌓아 막을까요?”라고 묻자, 공자는 近者悅遠者來 (근자열 원자래) 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정치, 기업경영, 인간관계를 망라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민 주도의 사업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도심에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신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재생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특성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주민분의 말씀이 마음에 납니다.

역지 유인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 쾌적함, 자부심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불만뿐 아니라 도시 미관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주택가 쓰레기 줄이기와 배출, 수거 방법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선지중화,

간판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정책들과 지원으로 긍정적 변화도 많지만 일상 속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어떨까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 등 모든 환경문제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정도가 가장 큰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아파트와 신도시에 가려 주택가, 원룸, 다세대주택 등 주택밀집 지역에는 쓰레기 무단 배출과 골목마다 넘치는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 방법은 크게 두가지 거점배출과 문전배출입니다.

첫 번째 거점배출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중간 수거 용기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편리할 뿐 아니라 자체 내 인력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활용이 주민의 수입으로 환원되어 복지에 사용되고 있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은 편입니다.

두번째,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음식점은 지정된 시간에 집 앞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우선 편리함은 있지만,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로 도심미관을 해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넘어지거나 넘침으로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쓰레기는 배출시간을 맞추지 못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촌지역 등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수집 횟수 부족과 쓰레기 넘침, 악취 등으로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배출 방법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원도심에도 쓰레기 배출 거점 시설을 시범 운영하면서 ‘재활용동네마당’의 문제점을 시간대별 운영과 일자리와 연계하여 관리 인원을 순회 배치하는 등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더 큰 변

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9회 정례회 이용식 의원

공공부문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촉구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양산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 용 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 속에서 시작한 올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해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관내 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 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의 정책, 국민들의 생활 방식도 함께 선진국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 활동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신흥국 경제도 전반적으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경제전문 기관들은 하나같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세계경제보다 더욱 뚜렷한 경기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증가세가 거의 멈추면서 체감경기는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약 2,500여개의 기업체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 모두가 경기불황에 영향을 받아 내수부진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기업경영 환경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 거시경제는 국가정책에 맡기더라도 지역경제에 준하는 미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공약 사항인 활기찬 경제 분야는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비롯해,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테마관광 추진, 4차 산업 선도형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연구개발 기반강화, 연구와 개발 그리고 물류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비즈니스 모델지원, 의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2019년도 당초 예산 반영률이 전년대비 -11%인 198억원이 편성된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일반회계 1조원시대를 열고 50만 자족도시로 달려가고 있는 중견도시인 우리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생산품목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 발주 시 관내 생산제품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제안 드리며, 양산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 할 때도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구매 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기업인들이 우리시에 대한 귀속의식을 함양하게 하고 기업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상호 공생공영의 길을 열어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9회 정례회 김태우 의원

시체육회 운영 개선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 태 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체육회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인구 35만의 경남도내에서 3번째로 큰 중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중견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여러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신도시 형성, 산업단지 조성, 편리한 교통망, 다양한 체육시설, 복지 및 문화시설 확충 등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생활은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시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다고 봅니다.

외형적, 물질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한 내적 성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육활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 신체활동 부족, 자기표현의 기회상실, 제한된 인간관계 속에서 체육활동은 체력을 단련하게 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다 밝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시민들은 공원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 기타 체육시설 등 운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다양화되고 발전되어 운동에 대한 참여와 기여도가 활성화되고 체육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좀 더 건강을 생각하고 즐기면서 운동하기 위해 각종 동호회 및 종목별 운동단체에 가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동호회 및 각종 단체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두가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체육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체육회가 앞장서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요로운 생활 영위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6년 1월 1일 양산시체육회와 양산시생활체육회가 양산시체육회로 통합 출범하였습니다. 시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열심히 활동해 왔으며 시민들의 체육활동 도우미이자 안내자로 앞장 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 종목별 단체 회장이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거나 공석으로 일부 단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것이 빈번하게 민원으로 발생하여 본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기도하고 하소연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운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시체육회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장교체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체육회의 역할 수행 부족은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집행부 및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는 시민들이나 체육회 회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체육회 임원진 구성에 공정함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체육회 사무국은 사무국장 2명, 사무차장 1명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체제로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내의 경우 1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창원시만 사무국장 2명으로, 이마저도 사무차장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사무국장 2명을 유지한 채 사무차장을 1명 더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창원시와 비교하였을 때 과연 우리 시체육회의 사무차장 증원이 필요한지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시체육회의 역할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아닌 시체육회에 대한 선심성 지원으로 비취질까 우려를 표합니다.

예산 1조원을 편성하여 시정을 운영하는 지금이 오히려 적재적소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계획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육성을 위해 시체육회 운영 지원은 필요합니다.

다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다시 강조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정례회 김효진 의원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공직자 윤리에 관한 주문

존경하는 양산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는 2019년도 본예산 안을 시민에게 알려드리고 집행부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면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공직자 윤리 강화에 대한 주문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시 전체 예산 수입을 보면 1조 1천 4백 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십 8억, 특별회계 1천 3백 1십 7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 증가한 금액이며, 특히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천 1백 4십억 원이 늘어난 예산 1조 원대 시대를 여는 해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능별 예산편성 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 3천 4백 6십

억 원으로 약 35%, 수송 및 교통예산 약 2천억 원 20%, 환경 보호예산 약 1천억 원 10%, 국토지역개발 및 공공 행정운영 비 각 6백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30% 증액되어 양산시 자체수입 3천 3백 8십억 원보다 1%로가 많아 양산시 자체수입으로 복지예산도 충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렇듯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보시다시피 고정 사업비가 전체 90%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양산시가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0%이내로 예산 1조원 시대라고 마냥 기뻐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내년 본예산을 편성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 연속성, 시의성이 있는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전국철인 3종 경기, 여성리더 대학 등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양산시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여성리더 대학은 양산시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및 여성친화 도시로서 매년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그 성과 또한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이 꼭 재추진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양산시 자체 사용 가능한 예산은 8백억 원 내외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산신도시 조성으로 많은 분들이 살기 좋은 양산으로 생각하고 막상 이사를 왔으나, 교통 및 교육 분야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양산시가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는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으로 향후 5년간 3천 6백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

해야 되고, 양산도시철도 부담금도 1천 3백억 원으로 5년간 총 5천억 원 이라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일반회계 빛이 약 1천 2백억 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래 양산시 발전을 위해 빛 상황을 주문하였고 2017년 4월 일반회계 모든 빛을 상환하여 빛 없는 양산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주문합니다.

이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윤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양산시 공직자 비위 현황을 보면 전체 24건으로 성실 의무위반 17건, 품위유지 의무위반 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분결과는 중징계 정직 4건과 경징계 감봉 5건, 견책 7건, 훈계 8건으로 심각한 수준에 공직자 윤리가 무너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 비위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퇴직예정공무원의 후생복리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면서,

양산시민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항상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159회 정례회 임정섭 의원

원동면 인구증가를 위한 개발방향 제안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정섭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확정된 2019년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 10년 원동면 인구증가를 위한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동면의 성장력은 면사무소 주변 지역의 개발과 인구정책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원동면사무소 주변 원동마을 인구가 1990년 이전에는 260가구 1,000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원동, 소원동, 관사, 삼정지, 신촌, 함포, 천내 등 7개 마을을 다 합쳐도 350가구에 57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원동면 현재 인구는(18년 11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1,997세대 3,4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구가 2,000세대, 3,481명과 비교해도 48명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일만 명 이상에서 3천명 수준으로 도달하는데 불과 20년 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3,400명 중 약 1,000명 정도는 주민등록상 주소만 되어있고 주말 및 일년에 한철씩만 거주하는 인구로 추정되고 나머지 2,000여명도 대다수가 고령화되어 한명이 사망하면 한 세대가 소멸되어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은 낙동강수계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등 개발보다는 규제를 우선시하는 법률의 저축을 받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개발도 어려우며, 공장 등 생산 시설을 유치하여 인구를 유입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60만평이란 농지가 사라져버려 남아있는 일부 농지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시키고 있으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원동면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인구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본의원은 시장님께 세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천혜의 자연전망을 가진 면소재지 부근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선 면소재지 부근 산지 및 산지에 접한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원동면에 활력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매화 축제, 미나리 축제 등 매년 방문객이 40만명 이상, 지역소득 300억 이상되는 양산시 대표축제에 대하여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이 활성화되기 위한 도로망 개선을 제안합니다. 국지도 60호선이 2022년 완공목표로 착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2019년 예산편성된 원동~물금 직선화 도로를 조기 착공하여 국지도 60호선 준공과 함께 발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원동의 중심지인 면사무소, 원동역을 기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개발과 인구증가를 위한 행정력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59회 정례회 김태우 의원

남양산IC 교통체증 개선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양산 IC 교통체증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해 온 많은 시민들이 “양산시는 살기 좋은 도시지만 불편한 것도 종종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남양산 IC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입니다.

최근 남양산 IC의 경우, 석산 및 물금 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출·퇴근 시간 이용 차량의 수가 급속히 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대 양주동, 중앙동 방면에서 남양산 IC로 진입하

는 차량이 계석 교차로까지 정체되고 있고 석산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석산 지하차도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출근시간대 차량들이 남양산IC를 통과하여 외곽으로 나가기 위해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막상 1~2분이 아쉬운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로 10분 이상 지연될 때 느끼는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크게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평일기준 한 달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9시 사이 남양산IC를 통과한 차량대수는 145,823대, 이중 교통체증시간인 7시~8시 사이 이용차량이 61,492대로 출근시간대의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61,492대 중 하이패스 전용차로 이용차량은 53,735대로 87%를 차지했습니다.

즉, 통계자료가 말해주듯이 7시~8시 사이 차량이 많이 몰리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곽으로 나가는 남양산IC의 경우 총 3차로로 되어 있으며, 하이패스 차로는 1, 2차선에 있습니다. 이마저도 2차선은 하이패스와 일반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진입구간이 짧고 하이패스 전용차선이 1차로에 불과해, 하이패스 이용을 위한 차량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출·퇴근 시간 남양산IC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체 남양산IC 이용차량의 87%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데 그에 비해 하이패스 차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의 추가 설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하이패스 전용도로 2개소와 통행권 발급도로 2개소로 운영하면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하이패스 차로 설치 및 관리는 우리 시 소관업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개선을 원한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해결방안에 대한 협업을 통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퇴근시간 남양산IC 출입 도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곽에서 양산으로 진입해 오는 남양산 IC의 경우 양산시청방면 출구 도로는 국도 35호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근시간 해당 연결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호포방면에서 35호선 국도를 따라 오는 차량과 합류 시 달려오는 차량속도에 위험을 느낍니다.

또한, 합류 지점을 조금 지나다보면 주유소가 위치해 있어, 주유하려고 우측 차선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차량과 고속도로에서 나가려는 차량 사이의 사고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호포 방면에서 국도35호선을 따라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국도35호선 합류지점에 속도제한 카메라의 설치 등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다각도로 고민하여 주실 것과 또한 주유소 진입차량과 고속도로 진출차량의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추후 3~4년 내에 사송신도시가 형성되면 교통 불편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양산시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단기 및 중, 장기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이므로 시민의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9회 정례회 최선호 의원

성공적인 사송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양산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 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송 공공주택지구의 기반시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날, 우리시는 인구 30만을 넘어 50만 도시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 양산물금신도시라는 인프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양산물금신도시의 조성과 안정적인 인구유입은 우리시의 성장판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훌륭한 정주여건을 갖춘 도시로서 저출산 시대에도 전국에서 상위권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하루가 다르

게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 만성적인 교통체증, 점점 고질화되고 있는 주차난, 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행·재정적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주는 교훈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송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들을 성장의 이면에 그늘짐으로 치부한다면 사송신도시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며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신도시가 우리에게 단순히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수 백 년 동안의 삶이 이어지게 될 공간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한창 조성 공사 중인 사송 공공주택지구의 도시 기반시설 계획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송 공공주택지구와 내송마을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뀌야 합니다. 신도시와 사회복지시설 진입도로 소1-203호에 이어 지방도 60호선이 바로 연결되도록 하여 향후 예견되는 교통 소통에 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 내송지역에서 1077호 지방도로 연결되는 진출입도로가 하나의 노선 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초 두 개의 노선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볼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부족한 것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 조성 공사가 완료되기 전 예사업시행주체인 LH공사로부터 신도시 조성 계획 변경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LH공사는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의 세

부사업으로 내송천 정비와 다방천 정비 계획을 가지고 곧 실시설계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내송천 정비는 구, 명곡쓰레기매립장 진입 도시계획도로와 따로 떼 놓고 추진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내송천 정비는 제방도로 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송천 정비에 맞춰 우리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나서야 합니다. LH공사와 함께 설계단계에서부터 내송천 정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연계하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방천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방천 정비를 근린공원 3구역과 연계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식 및 힐링 공간 마련을 위하여 다방천 친수공간 조성도 고민해야 합니다.

양산물금신도시 조성을 통해서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송공공주택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조성 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넘어 사송공공주택지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모색하여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영해야 합니다.

명품 신도시라는 이름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물금신도시 조성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송공공주택지구가 명품 신도시가 되느냐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9회 정례회 김혜림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김 혜 림 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또는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과 필요한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잡다단한 사회변화로 인해 복지 대상자들의 욕구는 다양해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는 변함이 없어 장시간 근무, 낮은 보수, 업무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은 곧 이직으로 연결되며 이로 인한 전문성 부족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

되어 복지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현재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도내 사회복지사는 5만 여명으로 그 중 1만 여명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민간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300여명에 불과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사명감 하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현장에 잘 전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향상하되 단일한 보수 지침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의 보수 향상은 사회복지사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유형에 따라 보수기준이 상이하여 시설 종사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있어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단일한 보수 지침을 하루 빨리 설정하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에 대한 살해, 협박 못지않게 사회복지사들도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여도 공식적인 의사소통 기구가 없어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 해결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 인권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복지사 개개인들의 직무능력 강화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대처가 유연해지고 자기계발에도 도움이 되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시정목표 중 하나로 “따뜻한 복지”로 삼고 세대가 행복한 시민행복 도시, 평생을 살피는 복지제일 도시로 복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세 가지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소명의식을 지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 / 정 / 질 / 문

| 제157회 임시회 임 정 섭 의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양산시민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양산시 행정을 살펴보고 새로운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기위해서입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초등학교 38개가 있으며, 약 2만2천명의 학생이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린이들은 걸어서 등·하교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자동차 보급의 확대 및 핵가족 시대로 변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 학교주위로 집중되는 통학차량으로 인하여 성인에 비해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보행자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였으며, 2011년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기준이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로 300m 이내로 물리적 기준만을 정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의 교통특성, 어린이들의 통학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더욱 차량을 통하여 통학을 시키는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신도시 위주로 젊은층이 급속히 증가하여 유치원 대란을 겪을 정도로 어린이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양산시는 기존의 행정보다 앞서나가는 통학로 안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본 의원이 제시하는 통학로 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면 가산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운영이 만족스러운 상태인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것으로 보시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게 되어있는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내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으로는 도로협착,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선, 횡단보도집중조명, 감응형 횡단보도, 과속경보시스템, 노란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학교주변의 도로 및 보행로 특성을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양

산시에도 설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시장님 생각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질문이 본 의원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은 학생 대부분이 도보로 통학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주변에 보행동선과 통학차량을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이 인구 50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주요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명문고 육성, 특성화고 설립, 기타 교육시설 확충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면, 그 환경 속에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153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인구증가 및 안정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김일권 양산시장

먼저, 가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교육장으로서 어린이에 대한 조기 교통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2,223명, 2018년 6월까지 1,1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하였습니다.

본 공원에는 4,900㎡부지에 이동식교육장 및 교육체험용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건널목, 버스정류소와 교통안내 표지판 등의 각종 교육시설물과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내 시청각 교육장 및 야외 체험교육장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놀이터와 잔디광장,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원은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이 취소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며, 하천구역이라는 위치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한 체험시설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확장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교육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고 지금보다 좀 더 보완된 현대식 교육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원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지정 관리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82개소, 노인보호구역 8개소, 장애인보호구역 3개소 등 총 93개소의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보고에 의하면 매년 2~3개소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시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화제초등학교 등 37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지정 및 약간의 시설물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방안과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승하차구역 관련입니다. 우선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정관리를 요구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지정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가남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등 일부학교는 설치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 38개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도로 여건이 적합한 경우 경찰서와 협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담당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결과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정발

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와 재협의 및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최선의 안을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제158회 정례회 김 효 진 의원

반려동물 복지정책 관련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 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입니다.

오늘 제가 반려동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내반려동물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1,000만 명이 넘었고 그로 인한 관리소홀로 유기되는 동물이 많아져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속에 반려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반려동물복지정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반려동물복지정책에 찬성을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여개의 반려동물놀이터가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인근 지자체인 울산광역시도 동물전용수영장과 장애물경기장을 갖춘 애견운동공원을 조성하여 애견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흥호수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울산광역시 애견운동공원도 기 조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도 매년 반려동물박람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부산국제반려동물박람회와 대구애견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도 내에 아직 설치된 곳이 없기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범사례가 될 것이고 유료로 운영을 잘한다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반려동물놀이터장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과 동물 모두 함께 쉴 수 있는 대형공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시는 황산공원이라는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황산공원의 전경입니다.

주무관님 반려동물 놀이터 조금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천부분에, 기형에 반려동물놀이터장이 지금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밑에 지금 현재 가보면 여기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낙동강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이 위치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황산공원에 주말에 나가보시면, 또 평일에 나가보시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 하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직접 들어옵니다.

의식 있는 분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와 가지고 분변을 수거해 가는데 대부분이 그냥 방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곳에 반려동물놀이터장 설치를 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또 줬습니다.

앞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산공원 남쪽 부산광역시, 김해시와 인접한 장소에 애견인들의 구미에 맞는 반려동물놀이터장을 조성한다면 3개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면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애견인들이 동물등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반려동물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어 동물유기방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은 인간과의 오랜 교감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된 일과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인생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간을 위한 동물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의 삶과 동행하는 동물이 될 것 입니다.

우리 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려동물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시민들에게 선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답변 김일권 양산시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박람회,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전용공원이 조성되고, 관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인생의 반려자로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반려동물 복지센터 및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한 바 있으며, 지금 부지물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은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서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려동물 복지센터 조성을 비롯하여 동물등록제 시행, 유기동물 입양 행사 추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초부터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을 사전 협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답변은 하천법에 의거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허용 시 다른 동물의 무분별한 놀이시설 요구, 하천이용자 불편 및 거부감,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인 하천 생태환경 저해 등의 사유로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황산공원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반려동물관련 시설은 시민들에게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적합한 장소를 찾기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제158회 정례회 이 용 식 의원

교통 대책 방안 관련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 큰 양산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 용 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주동과 중앙동을 잇는 “중부도시계획도로(중로2-7호선)개설공사”사업 중단 건과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건립중인 “금호 리첸시아”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과 관련 우리시의 교통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도심인 중앙동은 시청 소재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때 상주인구 5만명이 넘는 동으로서 양산지역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사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주동의 분동과 신도시 건설로 인한 급속한 도시쇠퇴현상으로 원도심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기존 중심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부재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단민원으로 사업폐지 된 중부도시계획도로(중로2-7호선)개설공사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보편적으로 원도심의 생활경제 활성화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유동인구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에서 원도심 상업지역으로의 접근은 남북으로는 35호국도로 인해 단절된 인식을 주고 있고, 동서로는 신도시 지역과의 도로규모의 상충으로 인한 연계성 부족으로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연결도로인 대동아파트~원도심의 오성목재 간 중부도시계획도로 중로2-7호선을 조속히 개설함으로써 인구밀집지역인 신도시와 원도심 간 원활한 인적, 물적,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설된 도로로 시내버스 노선을 편성할 경우 충분한 유동인구 증가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총사업비 68억2천5백만원 중 25억여원을 확보해 놓고도 집단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폐지했다는 것은 행정력 부재라고 생각하고 재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중부동 402번지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건립중인 “금호 리첸시아”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교통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상기 건축물이 건립중인 구)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은 교차로 지역으로서 평소에도 협소한 도로망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진입도로와 주변도로의 확장계획도 없이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된다면 교통체증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현상이 연출 될

것입니다.

금호 리첸시아의 사업규모는 2개동에 근린생활시설과 23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중이며, 지하4층 지상44층으로 1~3층은 1,2층 근린생활시설, 4~44층은 아파트로 설계되어 있으며, 연건평 43,235㎡로 교통영향평가기준 연건평 60,00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주변 교통체증과 관련된 기반시설과 교통흐름이 최대한 원활하도록 하는 개선 대책은 우리시가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의 세심한 검토와 함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김일권 양산시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도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9월 7일 책임관회의에서 도로개설 추진을 강조하고 담당부서에 지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에 따른 이용식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 장소는 향후 교통체증 가중이 예상되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지역을 포함하여 중앙동 원도심 지역에는 대형건축물 10개 2,000여 세대가 허가되어 있어 지난 9월 7일 책임관회의에서 입주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하고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명확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아 향후 대책수립 시 시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교통대책 또한 본 지역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원도심 전체를 두고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전에 우선 본 사업부지와 접해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일방통행로 설치, 교통신호체계 개선, 차로 운영방안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고 신호체계 또한 양산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59회 정례회 이용식 의원

노포~북정간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양산,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

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노포~북정간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과 관

련하여 종점역인 107정거장, 가칭 북정역 주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대책과 국도35호선 13번 교차로 신기사거리 교통체증해소대책, 그리고 북정동 주거밀집지역과 공업지역간 완충녹지 확대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종점역인 가칭 북정역 주변 기반시설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안입니다.

부산도시철도1호선 종점역인 노포역에서 북정까지 연결하는 양산도시철도사업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승용차 운행을 대체할 수 있는 녹색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철도 이용편의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공청회 당시 양산도시철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도시철도역 주변 주차공간 확보 및 기반시설 구축이었습니다. 이후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산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검토 중에 있는 기반시설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진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점인 북정역에서 양산, 유산, 어곡, 산막, 석계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상하북 주민들을 위한 타 교통수단과 환승체계 구축 등 종합대중교통운영대책과 이와 연계한 기반시설 설계계획은 현 단계에서 반드시 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사항이나 수립된 계획이 있다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107호 정거장 가칭 북정역 이 주위에는 현재 조성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공단에 1만 8,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조성 예정인 4개 단지

안에는 1만 여명, 상하북 주민 3~4만 명,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인 북정동 고속도로 윗부분만 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될 부분 주민만 1만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점역인 북정역의 중요도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35호선 13번 교차로인 신기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기사거리는 시내 및 공단지역의 진출입 초입부로 국도35호선 교통량 증가와 물금신도시 완공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교통수요가 해마다 늘어남으로 인해 상습정체구간으로 운전자들의 욕구불만과 통행시간 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에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양산시가 의뢰한 이 지역 교통체증해소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양산대교 재가설과 국도35호선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용역기관 대책안을 수용해 국토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2016년~2020년에 해당하는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차도는 반영되지 않고 현재 양산대교 재가설만 승인이 나 설계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설계 완료된 양산도시철도노선이 국도35호선 남북방향으로 중앙으로 건설되게 되어 있어 도시철도 교각설치로 인한 향후 지하차도 건설계획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시철도가 35호 국도 중앙선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기타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이 노선은 이 양산교에서 신기사거리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하차도를 반드시 35호 국도로 가야 되는데 이 중앙으로 도시철도 교각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

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소한의 주민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정동 주거밀집지역과 공업지역간 완충녹지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정동지역 주요민원을 해소하고 공장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북정동 95-4번지 일원에 완충녹지를 확대하여 차폐숲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주변공단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주거하면서 악취 및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북정동지역은 공업지역과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이곳 주민들은 오랫동안 많은 생활권침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3년 이내에 악취 민원 발생건수가 43건이나 접수되었으며 보통 저녁8시에서 10시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무원 야간순찰활동이 140회나 이루어질 정도로 악취 민원에 시달려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지도단속의 강화와 함께 단절된 녹지축을 완성하기 위해 완충녹지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김일권 양산시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북정역 뿐만 아니라 총6개의 역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준공이전인 2020년에 간선·지선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며, 각 역사별 환승이 편리하도록 노선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각 역사별 환승기반 시설인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환승 주차장의 위치, 규모, 소요사업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은 2019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정역의 경우 북정역 인근에

이미 교통광장 부지(7,900㎡)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환승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이용객 위주의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물금신도시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국도35호선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단지역 진출입 초입부인 신기사거리의 교통 체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에 내년부터 양산교 재가설(왕복4차선→왕복6차선)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양산2교 건설 및 국도35호 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국도35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지하철도 건설은 신기사거리 교통체증 해소의 좋은 방안이나 본 구간은 동(洞洞) 구역으로서 도로관리청인 우리시에서 전액 시비(400억원정도)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재정 등 제반여건상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하철도는 현재 국도35호선에 시공 계획 중인 도시철도 교각과 간섭이 예상됩니다. 도시철도시설의 기초공사 시행 전에 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북정동은 북정일반공업지역 일대의 공장이 개발되면서 최근 3~4년간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총43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북정대동빌라트와 일반공업지역 사이인 북정동 95-4번지를 차폐녹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 공해 방지라는 완충녹지 설치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도시경관 향상 등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완충녹지 추가 지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 차폐 숲 조성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악취 등 각종 환경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 159회 정례회 박재우 의원

원도심 난개발 문제 관련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삶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양산시는 물금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인구가 30만을 넘어섰고, 불과 3년만에 5만명이 증가하여 현재 3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양산시도 1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세심한 복지 및 편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김일권 시장님과 1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는 양산시는 성장과 더불어 균형과 질서를 생각하여야 할 때입니다. 인구 50만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만 뛰다 보니 새로 생겨나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몽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참 말을 타고 달리다 제자리에 서서 영혼이 쫓아오고 있는지 뒤를 돌아 본다’

우리시도 이제 그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제 자리에 서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금, 신도시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있는 원도심의 난개발 문제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내전마을입니다. 몇 백년간 마을을 형성하여 주민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

아온 공간이 어느 순간 공장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7년 전 2011년 11월 11일, 양산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공장이 들어서더니 이제 마을의 3분의 2 이상이 공장입니다. 마을이 아니라 공장 지역인 것이지요.

심지어 소토초등학교는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이들이 학원 차량이 아니면 등·하교가 불가능한 위험천만한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를 2011년 11월 11일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시의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양산시도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전마을, 울리마을, 소노마을 이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소토 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양산시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마을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양산 시가지의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양산 원도심의 쾌적한 삶이 보장 될 것입니다. 시가지와 원도심이 더불어 변화하는 그 길, 양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답변 김일권 양산시장

소토초등학교 일원의 공업지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공업용

지 수요에 대비하고, 공업지역 지정과 병행하여 기존 취락지 일대의 현실을 감안한 주거 및 공업의 복합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경상남도 고시 제30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최초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1943년에 개교한 이래 4,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토초등학교는 양산IC와 산막공단으로 둘러싸인 학교환경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및 소음발생과 같은 심각한 교육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2018년 9월기준 재학생의 80%가(191명중 154명) 1.5km이상 떨어진 인근 대석휴먼시아, 일양하이츠, 대우 마리나아파트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과 안전이라고 생각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소토초등학교 급식소와 도서관 개선 시설비, 공기청정기 구입비 등 지난 3년간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교의 완전한 이설입니다. 비록 학교이설은 교육감 관장사무입니다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해 본 바 교육청도 공감은 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예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부의 승인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어곡초등학교가 지난 2017년에 동일한 문제로 이설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시계획조례를 2011년 11월 11일 이전으로 개정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6월 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주거지역상 제조업소는 불허용 하였습지만, 2011년 11월 의원입법 발의로(정경효·민경식 의원) 인해 일반주거지역에 330㎡이하 제조업소를 허용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일반주

거지역에 제조업소를 불허용하는 조례개정 주민청구가 접수되었으나 주민연서수 부족으로 취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례개정 연서주민수 4,588명 중 2,130명 연서

(연서주민 기준 : 19세 이상 인구수의 1/50)

2016년 5월에는 주거지역내 제조업소를 불허용 하는 내용의 의원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부결되었으며,

※2016.8.16. : 학교반경 200m 이내 제조업소 불허용 개정 (심경숙·차예경·임정섭·김정희·이기준·정경효 의원)

금년 3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의원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서진부·임정섭·이상걸·박대조·이정애·차예경 의원)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제한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범국가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반하는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잦은 조례개정은 주민혼란 및 행정신뢰성 제고,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지양되어야 하는 행정적인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 시에는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전마을, 울리마을, 소노마을 이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중 이주정착지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은 기존 자연마을의 이전은 현행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을별 세대수 및 인구수

-총3개마을 160세대 319명 -내전마을 73세대 인구 118명

-울리마을 40세대 인구 92명 -소노마을 47세대 인구 109명

| 제159회 정례회 이장 호 의원

양산시 공무원인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장호입니다.

본의원은 1,400여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양산시 공무원인사에 대해 시정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제66조의2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이 있으며 이법을 토대로 공무원인사의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문화를 정착하여 인사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 김일권 양산시장

공무원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기타 인사제도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보장하고 있고, 본인의 원에 의한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원칙에 기반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령에 따른 승진·전보 임용기준을 준수하고, 근무성적을 기초로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



제158회 정례회(2018년 9월 3일)

양산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의안

발의의원



박일배 서진부 김효진 정석자 임정섭 이상정 이종희 이용식 문신우
김태우 최선호 곽종포 박재우 이장호 김혜림 박미혜 정숙남

월라산단, 서창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조성과 주진·홍등지구, 소주지구 등 대단위 택지조성과 더불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웅상출장소 관할지역에 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법원민원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산시 의회는 편리한 법원 민원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웅상출장소 청사 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시 웅상출장소는 인구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급성장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2004년 웅상민원출장소, 2007년 웅상출장소 설치, 2014년 청사신축 이전 개소하여 4개과 19개팀 87명이 근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본청으로 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출장소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양산등기소가 지리적

미흡한 실정입니다.

웅상출장소 지역은 부산 및 울산광역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양산시 전체인구 35만명의 3분의 1인 약 1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 공단에 650개 기업체 1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는 양산등기소와는 지리적 원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성산이라는 큰 산에 가로 막혀 있고, 7호 국도 및 국지도 60호선을 통해 부산시를 거쳐 양산등기소로 가야하는 교통의 불편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웅상출장소 관내 등기소 부재로 인해 기업인들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양산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양산시 북안남 5길 12)까지 20km(왕복40km)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산등기소 까지 가는 구간은 부산시를 거쳐 가는 관계로 교통병목현상으로 4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자주발생하며

상당한 금전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활동은 각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유관기관 등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가 많아 다량 발급이 곤란하여 필요 시마다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웅상출장소 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시간과 인력, 금전적 부담해소 등 기업에 상당한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참고로, 웅상출장소 청사 내 설치된 행정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지적·

토지·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교육제증명, 국세증명, 건강보험 등 86종의 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설치사례를 보면 서울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 서울 성북구, 군산산업단지 내 산단민원센터, 화성시, 강남구청, 울산 북구청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법원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웅상출장소 청사 내에도 편리한 법원 민원행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제158회 정례회(2018년 9월 21일)

소토초등학교 이전 건의안

발의의원



이중희



서진부



박일배



정석자



임정섭



이상정



이용식



문신우



김태우



최선호



곽종포



박재우



이장호



김혜림



박미해



정숙남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재 소토초등학교는 1943년 4월 1일 개교하여 2018년 현재 4,351명이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본교 주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해야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건의합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7회 정례회 제3차 도정 질문에서 한옥문 도의원이 소토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소토초등학교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많은 공장들에 둘러 싸여 있고, 학교의 울타리와 불과약 4미터 정도의 거리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문제, 소음문제 등이 학습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 I.C 로 진입하는 도로가 학교와 인접하고, 학교 서쪽은 경부고속도로, 북쪽은 산막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가까워 창문을 열고는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먼지와 소음이 심합니다.

특히, 학교는 국도 35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산막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학교 건물 2층 높이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정문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의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도보로 등·하교

하는 학생이 2명에 불과합니다. 주위가 대부분 공장이다 보니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공업지역이다보니 물류수송을 위한 대형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습니다.

소토초등학교 학생 거주지 현황을 보면 휴먼시아@ 29.32%, 대우마리나@ 47.12% 일양@ 4.19% 등 학교 학생의 약 80%가 먼 거리에서 등교합니다. 부모님이 태워주거나 학원차로 등교하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등·하교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신도시로 이사가고, 이로 인해 상복면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휴먼시아 아파트 일부가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토초등학교 동창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학생들이 공장의 매캐한 연기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소토초등학교를 이전해줄 것을 건의 합니다.

제159회 정례회(2018년 12월 21일)

KTX 중간 역사 설치 건의문

발의의원



박일배

서진부

김효진

정석자

임정섭

이상정

이종희

이용식

문신우



김태우

최선호

곽종포

박재우

이장호

김혜림

박미혜

정숙남

현재 고속철 KTX는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총 5개의 노선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민은 이 5개 노선 중 고속철 KTX 경부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민이 경부선 KTX 열차를 타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갈 경우 리무진버스 3000번을 이용하고, 자가용으로 갈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울산역에 가고 있습니다.

고속철 경부선 KTX의 경우 1일 최대 운행횟수 264회 중 122회로 46%이고, SRT의 경우 1일 운행횟수 120회 중 80회로 67%로 전체 KTX와 SRT 전체 운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 기준으로 KTX는 하행 60회, 상행 62회로 총 122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하행 33회, 상행 34회 울산역을 경유하고 있으며, SRT는 하행 40회, 상행 40회로 총 80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하행 21회, 상행 23회 울산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KTX 중간 역사 설치시 KTX와 SRT가 완행화에 따른 우려는 현재 울산역을 경유하고 있지 않는 열차를 정차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은 경부고속도로 노포IC, 부산시외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외곽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KTX 중간 역사 설치시 연계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인근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150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KTX 중간 역사”가 설치되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부산역·울산역에 집중되는 이용객들을 분산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KTX 경부선의 고속철선로인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노선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 총 51.7km 거리 중 울산기점 27.5km 지점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KTX 중간 역사” 설치가 필요합니다.

경부선을 제외한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4개의 노선을 합해도 운행횟수 면에서 경부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고객, 교통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역사 설치요인을 가지고 비교하였을 때 경부선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노선에 KTX 중간 역사 설치 예정지인 부산광

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역사 설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의 사저가 KTX 중간 역사 설치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KTX 중간 역사의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관광객 및 경남·부산·울산 시민의 교통이용 편의제공 및 이용고객 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국토의 균형발전에 노력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라.

둘째. 국토교통부는 KTX 완행화 등 원론적인 반대를 멈추고 지역 변화 상황을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KTX 중간 역사 설치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셋째. 한국철도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KTX 중간 역사” 설치에 노력하라.



■ 민원처리 현황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18.6.28	옥외간판 제한 조례 개정 요청 건	건축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산시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3층 이하에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물금읍 신도시의 경우 대규모 고층건물이 다수 조성됨에 따라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에 따라 벽면이용간판을 5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으며, - 이미 완화된 규정에 대한 전면 허용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와 위배되며, 물금신도시 외 경상남도 소재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설치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현재로써는 개정이 어려우며 경상남도 내 타 시·군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 아울러 5층 초과 층의 벽면이용간판 설치에 관하여는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 제3조제2항제4호에 의거 최상단 간판으로 일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일민원
18.7.16.	경전철 환승연결의 문제점		- 민원인께서 건의한 노선변경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현시점에서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노선변경 사항을 기술적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 이에 대한 결과를 8월초에 주민설명회(사이동마을)시 알려드리도록 조치하였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해당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8.7.23	원동면 내포리 산1-1번지 일원의 풍력발전소 설치 반대	일자리경제과	- 우리 시 풍력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된 사항으로 현재 사업진행중인 원동풍력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이 혼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등)에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되어있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 개별법(도시계획, 개발행위, 환경 등)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8.8.1	환경문제와 시민의식	도시건설과	- 귀하의 건의에 대하여 우리 출장소에서는 하천산책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및 하천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통해 하천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동에서도 환경미화원 및 노인일지리를 통해 관내 환경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근로자로 인해 소음발생 및 불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각 동 및 도시건설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여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 하천 유지관리청인 출장소에서는 선우 4차 앞 공공용 쓰레기마대 설치는 별도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추후에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6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경건에 관한 건	의회사무국	- 먼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 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 우리 양산시의회는 현재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8.9	덕산아파트 공용주차장 설치 의뢰 민원	교통과	- (교통과) 공용주차장 설치 요청한 가촌리 990-9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체육시설 용도로 현재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며, - 아파트 단지내 주차난 해결은 단지 내 부지활용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함이 입주민들의 빠른 주차편의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18.8.9	악취	환경관리과	- 삼성동은 북정·산막 일반공업지역, 산막산업단지, 북정공업용지 조성 공사현장 등과 연접하여 위치함에 따라 악취, 미세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신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북정 주거지역의 경우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등 배출업소에서 발생한 악취가 주로 야간 및 새벽시간대 풍향 및 기압의 여건에 따라 확산되지 못하고 인근 주거지역에 정체되므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삼성동 주민들의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북정·산막 지역에 위치한 11개 악취중점배출업소를 선정 전문기관의 악취기술자원을 받아 2017년 ~2018년까지 악취 자발적감축협약(MOU)을 체결하고 악취저감목표(50%)를 설정 약 2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여 악취방지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와 더불어 북정·산막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 실시 및 순찰(2018년 현재 81회 실시 : 야간 9시 ~ 22시(4회/주)을 강화하여 총 47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악취를 측정하여 17개업소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 행정처분을 통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2017. 9. 23. ~ 10. 17까지 북정 대동빌라트 및 신기해강아파트에서 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곳 모두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도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악취제로 5분대기조 상시운영, 주기적인 악취순찰 실시,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지역민인 참여하는 합동점검) 및 악취저감시설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는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18.8.11	양산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해주세요	정수과	- 우리 시 수질검사기관은 광역시 수질연구소와 다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이화학분야 4명(3년 이상 경력자 3, 관련학과 졸업자 1)과 미생물 분야 2명(3년 이상 경력자 1, 관련학과 졸업자 1) 총 6명의 법정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먹는물 분야 숙련도 시험 및 정도관리 현장평가로 측정 분석기관의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능력과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 현재 인력은 먹는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인력을 충원하고자 요청한 상황입니다. - 앞으로도 상수도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8.8.16	금빛마을 문화제협조	공원과	- 금빛마을문화제 행사관련으로 사용 신청시 사전에 구두 상으로 상행위 금지 등 공원법상 금지행위에 대해 안내드린바 있으며 공원내에서 상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협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 공원사용 신청에 대한 회신 안내문에도 공원 사용 조건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 조건 위반시 사용금지 될 수 있음을 통보드렸으나 사용 조건 사항 중 4가지(상행위, 식품 및 식품의 판매, 몽골텐트 등 구조물 설치, 사용 시간 미준수)를 미준수하셔서 사용 금지 통보를 드리게 되었으며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50조 및 시행령 49조에 따라 노점 및 행상의 상행위, 이륜 이상 차량의 영업 행위는 금지 행위로 지정되어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익행사에서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된 푸드트럭은 공원 내에서 허용되고 있음. 이륜 이상 차량의 영업 행위도 공원관리청에서 위탁한 공원시설의 경우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나 금빛마을문화제 행사는 상기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 언급하신 삼랑문화제나 화야제는 공원법이 적용되는 대상지가 아니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에 배치되는 푸드트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 금빛마을문화제 주최 측에는 이번이 처음임을 감안하여 상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조건으로 사용 허가 회신을 다시 통보드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8.20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상북교통광장조성)	공원시설과	-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북대석교통광장 사업추진을 위해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재검토 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8.20	하수도 매립의 건	건설과	- 해당 마을 안길은 과거부터 삼감마을 안길로 사용되어져 온 길로써 마을안길(최단폭 약 2.5m) 좌·우측으로 개인사유 주택과 삼감2천(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계부로 안전 펜스 등 시설물 설치할 시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상황이며 - 향후 삼감2천(하천) 정비 등 사업 시행시 해당 펜스 등 시설물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18.8.24	폐기물 관련 민원	자원순환과	-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아시다시피 방치폐기물은 건축주 협조 없이 행위자가 처리불가한 상황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 및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여집니다. 양산시의회 의 조사는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57회 임시회(2018.7.9.~7.13.)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158회 제1차정례회(2018.9.3.~9.21.)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8.8.24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환경관리과	- 무허가축사 전담부서 신설 요구에 관하여 축사농가의 신속한 적법화 추진을 비롯한 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18. 8. 22. 전담 TF담당 구성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개별농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 적법화 미추진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종·규모별 적법화 이행기간 변경, 가축사육제한거리가 먼거리에서 가까워지는 축종으로 변경 가능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내용을 반영하여 「양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8.8.30	유산일반산업단지 (주)석암과 (주)우진산업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 해소 요구 및 (주)우진산업의 환경공해 유발로 인한 피해대책 호소	투자유치과 원스톱허가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 유산일반산업단지 내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C23)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변경은 공고 및 신문 게재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관련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저감시설(공강형 생산설비, 입체적 2단계 세륜·세차시설, 야적장내 구조물 설치 등) 설치 업체만 입주 허용, 기타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정에 대한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신청 승인하였으므로 관계법령 상 저촉사항 없음. 이에 따른 공장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수리과정도 관계법령을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양산시의 특혜제공은 없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원스톱허가과) - 골재선별파쇄는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수리하여야 하는 행위이며, (주)우진산업은 골재선별파쇄 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하는 등 환경신고 절차를 사전에 거쳤고 골재선별파쇄 신고 시 환경부서와 환경오염대책 협의를 하였음을 확인, 유산산업으로 이전한 새로운 골재파쇄장의 민원 피해 등을 예상하여 불수리 할 수 없으며 법률적 지속재량행위인 골재선별파쇄신고를 수리한 것은 정당한. 또한 협의 부서의 골재선별파쇄를 할 수 없는 중대한 구체적인 법령 위반 판단사항이 없어 불수리 할 수 없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적근거 없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주민 반대를 근거로 골재선별파쇄신고 취소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부산광역시 행정심 제 2008-75호], 소음·분진 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합의하지 못한 업체에 골재선별파쇄신고 법정요건 이외의 수리조건 불이행으로 생산 중지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부산광역시 행정심 제2011-248호]고 판단한 기준 판례가 있습니다. (건설과) - (주)우진산업이 야기하고 있는 환경공해 문제에 관해서는 (주)우진산업의 비산먼지 피해민원과 관련 2018.8.14. 환경관리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역제시설인 수송공정의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 미흡, 파쇄시설 살수시설 미흡 등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개선명령, 18.8.14 ~ 18.10.1) 하였으며, 동 행정처분과 관련 비산먼지역제시설인 자동식세륜시설의 측면살수 보강, 파쇄공정의 살수시설 보강 및 집진시설 설치(37) 등을 이행하여 비산먼지발생을 저감토록 조치중에 있음. 그 동안의 행정지도에 따라 (주)우진산업은 - '18. 8. 1.부터 살수차(5톤 용량) 구입, 진입도로 수시살수 - 모래 및 석분 등 야적장 덮개설치 - 진입도로 낙하물 관리 및 청소(매일) 실시를 위한 고정인부 배치 등 의 조치를 하였음. 이후 (주)우진산업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8.9.4	시의회 조례에 반하는 공고문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묻고싶습니다.	공동주택과	-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함에 따라 2018.8.14. 양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바르게 살기운동양산시협의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양산여성단체협의회, 양산시아파트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양산시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촉위원 중 40%(4명)를 공모한 바 있으며, 2018.8.21. ~ 22.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6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르게살기운동양산시협의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양산 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양산시지부 등 특정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공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귀하의 민원이 기 접수된 바 있어 - 해당부서(공동주택과)에서 검토한 결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8. 8. 31. 위원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단체명을 삭제하고 재공고 사유를 기재하여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6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인 양산시 공동주택연합회(2명), 양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2명)로 재공고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18.9.12	열병합발전소 추가 증설 및 연료전지 발전소 계획 막아주세요	일자리경제과	- 양산물금택지개발지구(양산물금신도시)에 계획된 현재의 한국난방공사 부지에서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용 열 공급을 위하여 1995. 4. 4.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열병합 28.2MW+80Gcal/h, 보일러 421Gcal/h)를 득하여 1999년 11월부터 열 공급 시작 - 2003년 4월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 원료를 중유(B-C유)에서 청정원료인 천연가스로 변경 및 발전용량 변경허가(열병합 28.2MW+80Gcal/h→ 15MW+15Gcal/h, 보일러 421Gcal/h→275.2Gcal/h(34.4Gcal/h*8기))를 득하였고 - 2017년 2월 양산물금신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안정적·경제적인 열 공급을 위하여 동일 부지에 열병합 발전시설 용량 증가(15MW+15Gcal/h→114MW+84.1Gcal/h)와 열병합 발전시설 용량 증가에 따른 첨부부하 보일러 용량 감소(34.4Gcal/h 8기→34.4Gcal/h 3기)에 따른 변경허가를 득하였으며 - 당초 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사송신도시)의 열 공급을 위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익성 문제로 허가권을 반납함에 따라 한국난방공사에서 현재의 부지에서 연계 열 공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7년 9월 첨부부하보일러 용량 증가(34.4Gcal/h 3기→ 34.4Gcal/h 4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 현재 한국난방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득한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018. 9. 14.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 개최하였고 공람 중에 있음.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을 허가기관과 한국난방공사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9.13	재정예산 지역 및 공공일자리 관리 사업	공원과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양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사업은 사업예산 및 적용되는 사업 업무 지침과 규정이 각각 다르며 업무 형태에도 차이가 있음. 현장 근무의 특성상 날씨의 영향이 커서 현장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일자리 사업 업무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도록 하고 있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는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은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로 작업 중단이 필요한 경우 주관 부서의 허락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천 시 안전관리 대책으로 작업 중 비가 3분 이상 계속 내리는 경우 즉시 중단하고, 업무 지침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의 절반 미만 근무 시에는 반액 임금을, 절반이상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공원조성사업은 야외현장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업무이므로 부득이하게 기상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폭염기간에는 폭염주의보 이상 발령 시 최고 기온이 되는 시간대(11시~14시경)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관련 예산 중 재료비로 교부된 금액은 일백만원으로 호미, 집게, 빗자루, 갈고리, 삽, 낫 등 작업 도구를 구입하여 근로자분들께 지급함. 계절별 작업복은 현재 예산 금액으로는 구입이 불가하여 작업자 개인이 준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용 쓰레기 마대는 지급되었으나 운반도구는 별도 지급되지 않아 향후 운반도구는 예산이 허용 될 경우 지급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작업 도구(마대 및 집게)는 워터파크공원 사무실에서 일괄 배부한 이후 업무 종료 시 각 근로자분들이 워터파크공원 창고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다른 근로자분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이 따로 있으신 사항이 아니며 공원별로 공동 보관 장소 마련은 작업 환경 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급여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간식비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 급여로 처리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에서 초과 금액 부분이 과세급여로 처리되어 사회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급여 계산 시 과세급여와 비과세 급여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 시 오류가 없도록 거듭 확인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급여 지급 후 각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담당자에게 요청 시 지급명세서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급여 관련 시스템요청 건은 다른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될 경우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사업장 특성 및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급여는 법정최저지급 기준으로 한 달 근무일 일당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및 한 달 급여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양산시에서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 또한 확대하고 있는 등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중장년 적합 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18.9.14	내원사 입장료 감면요청	문화관광과	- 현재 내원사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81호 '천성산내원사일원'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 통사찰로서 해당 사찰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는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43조에 따른 문화재관람료에 해당하며 - 감면 요청하신 입장료는 같은 조항(제2항 관람료는 해당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인 내원사가 징수권한분만 아니라 금액책정권 한도 가지고 있어 사유재산 관리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우리 시가 직접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시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무료입장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산시의회에서도 동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양산시의 향후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18.9.14	국민주택 입주자	공동주택과	- 재건축 관련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대근아파트 주민들의 고충 내용은 서창 아크리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시공사에 소음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관련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 발생시에는 조사를 통하여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 대근아파트주민의 요청으로 2018. 9. 17.(월) 15:00 웅상출장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공사와 민원간 충분한 대화를 거쳐 민원사항에 대해 상호 원만히 합의 하도록 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 향후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련자에게 지도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서로간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9.14	명동 일원 주차허용 요청	경제환경과	- 주차장 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양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양산경찰서에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양산경찰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해당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보도가 없어 주차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및 통행 불편으로 수회에 걸쳐 민원이 접수된 곳으로, 서창동 외출마을 통장에게 연락하여 마을 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 및 조치하겠다고 회신 받았으며, - 향후 양산경찰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9.19	양산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증설 철회요청	일자리경제과	- 지역난방공사 주체로 사업 및 설명회를 홍보하도록 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사업 및 주민의견서 제출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 할 수 있도록요청하였습니다. - 환경단체대표의 명의로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위원 추천과정에서 나온 사항으로 명의로도 사실은 없으며, - 현재 양산집단지너지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의견서 제출기한 중에 있습니다. 지진, 미세먼지, 주변시설물 등과 관련하여서는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한 국난방공사에 제출하여 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9.19. ~ 9.26	수영강습	시설관리공단	-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체육센터는 양산시민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강좌의 합반 및 폐강을 통해 매월 신규초급반의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규강좌 개설을 위한 여러 제반사항(레인여건, 강사배치 등)의 이유로 초급 강좌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올려주신 소중한 고견도 참고하고 신규 입문 대기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수반은 주5회에서 주3회로 변경하고, 신규초급반은 6개월 과정(주3회, 주2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 최근 우리시의 인구 증가로 수영 수요 또한 증가함에 한정된 시설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방안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9.20	불법 주차차 단속	교통과	- 제기된 물품범 범여리 2675-1 일원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2016년 고정형 주·정차 CCTV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상시 단속 중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리거나 사선으로 주차 하는 차량을 위해 물금지역 이동식 차량 1대를 배치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해당 구역에 이동식 단속 차량을 이용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2018.10.9. ~10.23	웅상지역 수영장 신규건립 타당성 근거 요청	체육지원과	- 우리 시에서는 인구 50만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전국 대회 유치 가능한 공인규격 수영장 건립을 목표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공인규격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완료계획 시점인 20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 수영장 건립부지 웅상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입지가능 용도지역,대중교통 접근성, 양산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지역균형발전 등 후보지선정 기준별 교차분석을 통해 양산시 전역에 대한 개발가능용지를 도출하였고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추정 공사비, 토지보상비 및 주요장단점 분석을 통해 건립 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공인규격 수영장 건립을 위해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인 건폐율 적용 및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3만㎡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며, - 양산생활권(물금지역, 동면, 4개동 권역) 지역은 개발가능부지가 부족하고 공공수영장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 중 수영장 건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산지 등으로, - 접근성이 양호한 평지의 경우 대부분 공동주택 개발 등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있으며, 부지확보 위한 토지보상비에 과도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 시행 및 시행예정인 체육공원 부지 내 수영장 건립을 통하여 체육시설 집적화에 따른 건립사업비와 토지보상비 절감 및 향후 운영효율 증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부지 내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영장 이용수요 대비 부족지역(서부양산)에 대한 단계적 공급계획으로 2019년부터 상·하북 종합복지관 부지(상북면 석계리 일원) 및 국민체육센터 인근 체육시설 부지(물금읍 가촌리 일원)에 수영장을 포함한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건립(실내체육시설) 공모신청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공모신청 사업은 전국지자체 대상 생활 SOC사업(체육·문화)으로, 우리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민원
18.10.20	시의원 국외연수 관련	의회사무국	- 우선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8조 의거 여행계획서를 출국일(10월 19일) 18일전인 10월 1일 양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받았으며 심의의결서 및 여행계획서는 10월 1일 전자결재시 모두 '대국민 공개'로 공개처리 하였으므로 시민에게 비공개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후 공무국외여행 심의의결서 및 여행계획서 홈페이지 게재는 출국일 15일 전까지 심의의결을 받은 후, 여행을 가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양산시의회에서는 출국일 18일전 심의의결을 받은 후 출국일 11일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의록이 미작성된 부분에 관하여는 심의일(10월 1일) 3일전 9월 28일에 모든 위원들에게 여행계획서 및 심의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을 거쳤으므로 단순 가부 결정만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후 연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10.19. ~ 10. 25. 총 5박 7일간 이루어진 국외여행은 심의 의결 된 여행 계획서대로 모든 방문지를 방문하였으므로 심의 결과와 다르거나 끼워맞추기 식 여행일정은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1월 9일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인 국외연수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0.22	양산시는 수소전기차 육성은 관심 없나요?	환경관리과	- 양산시는 2021년 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과 함께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재, 2020년 수소충전소 착공을 위하여 관련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선정 및 예산, 운영조건 등 충족 시 빠른 시일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양산시 2021년 수소충전소 운영 시기와 맞추어 수소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10.22	열병합발전과 송전탑 지중화 동시추진	일자리경제과	- 귀하께서 제안하신 "열병합발전과 송전탑 지중화를 동시 진행"에 대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현재 진행중인 집단 에너지시설의 송전 및 수전계획은 인근 한국전력공사 물금변전소와 지중선으로 연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토록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선로(345kV) 및 철탑은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비 과다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중·장기적인 검토 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진행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10.24	시의회 의장 및 의원전원 업무추진비 공개요청	의회사무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양산시의원 17명중 5명(의장1, 부의장1, 상임위원3)에게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양산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18년도 3분기부터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조례제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현재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또한 정보공개 청구 시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18.10.28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올려주세요	여성가족과	- 귀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비 4만원은 경남도내 보육교사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는 경남도 사업으로, 부산, 울산 등에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와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산시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경남도에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외에도, 하계휴가비(7만원), 동일 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3~1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는 도비 지원금 5만원에 추가하여 시비로 평가인증어린이집 처우개선비(5만원)를 지원하는 등 시 자체 예산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아반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교사 지원 사업”, “승급교육비 지원 사업” 및 “승급교육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11.1	주민편익시설 수영강습 시스템 변경 반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 우선 수영장 강습 관련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보다 많은 양산 시민들 에게 수영강습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 또한 수영 회원들에게 공지된 구체적인 강습 시스템 변경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운영방법 변경 공지 후 양산시의회에 수차례 동일한 민원 사항이 접수되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주재로 주민편익시설(2018. 10. 25. 15:00, 이종희 의원 참석), 국민체육센터(2018. 10. 26. 14:00, 서진부 의장·김효진 부의장 참석)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18년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편익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습 회원 10여명 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동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을 추가로 가졌습니다. - 가까운 시일내에 설명회 및 대표단과의 논의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양산시의회, 양산시 담당부서,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협의할 예정이며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11.9	주민편익시설 이용변경 안에 대한 의견	시설관리공단	- 양산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수영 강습 수요가 증가하여, 수영 기존강좌 합반, 폐강 및 토요일 강좌 개설을 통한 신규강좌 개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수영강좌 변경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주재로 주민설명회 2회, 수영회원 대표단과의 간담회 1회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모든 시민에게의 균등한 기회제공, 기존 회원분들의 건강관리 생활화, 강좌의 연속성, 운영의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좌운영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우선 2019년도에는 강습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하고 반별 정원을 조정하여 기존회원을 5개 레인에 중·상·고급반으로 분산 배정, 1개 레인은 신규강좌를 개설 할 계획이며, 2020년 1월부터는 온라인 접수 후, 공개추첨을 통해 1년 과정 강사전임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공공체육시설인 스포츠센터 대기인원 해소와 강습 기회 제공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다소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8.11.9	수영강습 관련 (정원초과, 샤워시설, 토요일무수영)	시설관리공단	- 양산시시설관리공단 3개 스포츠센터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강좌(수영, G·X, 골프, 볼링, 배드민턴, 유아체육 등)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 수요의 증가로 대기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영신규초급에 대한 민원 및 기타 종목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먼저 공단 3개 스포츠센터는 양산시 공공체육시설인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며, 수차례 여러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결정된 내용임을 양해 바랍니다. - 공공체육시설 공단 3개 스포츠센터의 대기인원 해소와 형평성을 고려, 보다 많은 시민들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을 포함 전체 강좌를 2019년 1월부터 6개월 과정(공개추첨, 승급제)으로 하여 정기적(1월, 7월/연2회)으로 신규모집을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꼭 강습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수영 시간 및 레인배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회원들의 건강관리 및 강좌의 연속성이라는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양산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정성, 형평성을 우선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시의 인구 증가로 수영 수요 또한 증가함에 한정된 시설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험임을 양해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일민원
18.11.20. ~11.24	수영강습 추첨제 반대	시설관리공단	- 먼저, 정원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에 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영 강습 운영 변경안 시행 초반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나, 미등록 회원 발생시 추가 모집 없이 정원을 점진적으로 맞춰나가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감도를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영강습 시스템을 추첨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변경안 시행 이후에도 수영강습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민원

접수일자	제목	처리부서	처리결과	비고
18.11.22	토요수영 유료화 반대	시설관리공단	-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 [별표5]에 따라 수영강습 이용시(월~금)에는 월 이용료 납부, 토요일 수영장 이용료는 일일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주5회 등 록회원들에게는 토요일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 현재 양산시 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스포츠센터 토요일 자유수영 이용 인원도 증가함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무료입장 혜택을 폐지하게 된 것이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14개 구 및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수 토요일 수영 유료 이용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역여건·시설 환경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지역마다 운영방법이 상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자유수영은 8시~9시, 12시~16시, 19시~20시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 1월부터 기존 평일 19시 자유수영 시간을 강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수영 강습 대기자 해소를 위함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8.11.26	배움터지킴이 예산지원 중단관련	행복교육과	-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양산교육지원청 주관사업으로 2016년도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공백시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양산시에서 2017년부터 1일 3시간씩 지원하였습니다. - 이후 2018년도 교육지원청 지원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다시 전환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근무시간 중복 및 타 지자체 형평성(경남도내 지킴이 2명 근무는 양산시가 유일)의 사유로 2019년도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배움터 지킴이 운영사업을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8.11.26.	자유수영관련	시설관리공단	- 현재 국민체육센터의 자유수영은 8시~9시, 12시~16시, 19시~20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 1월부터 기존 평일 19시 자유수영 시간을 수영강습 대기자 해소를 위하여 강습으로 운영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지역여건·시설환경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운영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8.12.17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 안전문제를 점검해주세요	체육지원과	- 귀하께서 지적하신 스키장 리프트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8. 10. 2. ~ 10. 5.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도 2018. 12. 6. 관련 부서합동으로 스키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리프트 탑승석의 기울어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는 기계 설계 시 안전에 대한 한계 기울기를 고려하여 설계된 사항으로 이용 상에 구조적 위험성은 없으나 안전사고의 비예측성, 돌발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리프트 승하차장 안전요원 추가 배치, 고객 탑승 시 리프트 중앙 쪽 탑승 안내, 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 및 시설 보완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통보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국민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에덴밸리 스키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어 스키장의 슬로프를 넓히거나 광고 전광판 설치 지원 등과 같은 체육시설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향후에 검토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2.27	도로 시설물 설치 위치 변경 요청합니다	도로시설과	- 해당 도로 시설물 설치 공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상삼~내석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2019년 1월 4일자로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도로과)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여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의정활동 역량강화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여행 개요

- 여행 기간 : 2018. 10. 19.(금) ~ 10. 25.(목) (7일간)
- 방문 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목 적 : 본 여행을 통하여 해외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함양하여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방문 장소 : 말레이시아 여행자 센터 외 13개소

■ 여행국별 주요 방문결과

1. 말레이시아

· 페트로나스 트윈타워(KLCC)

지상 175m 높이의 41층과 42층에 걸쳐 두 빌딩 사이를 스카이 브리지로 연결해 양쪽 건물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였다. 또 88층부터 4개 층이 하나의 층을 이루는 중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층까지 합하면 92층이 된다. 외형은 금속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콘크리트 건물이며 외벽을 스테인리스강과 유리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뽐낸다.

한국의 삼성건설과 극동건설이 컨소시엄으로 한쪽타워를

시공하였고, 다른 한쪽은 일본회사가 시공하였다. 한국 컨소시엄은 일본에 비해 35일 늦게 착공하였으나, 최종 완공은 6일이 앞섰다. 일본과의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시작이 되었다.

▶ 시사점

쿠알라룸푸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만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 찼는데 그 명성을 알 수 있었다. 타워에서 나오는 조명이 화려하게 반짝이면서 주변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멋진 야경을 보여주어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드는 만큼 우리 양산시 랜드마크인 양산타워도 양산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출입구 앞 부지를 잘 활용해 포토존이나 분수대 등 설치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발전 해 나가야 하겠다.

· 말레이시아 여행자 센터

말레이시아 여행자 센터는 1935년에 건축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군의 전쟁사령부와 영국군의 전쟁사령부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말레이시아 국회의 첫번째 회의가 이곳에서 개최되었고 말레이시아의 여러 왕들이 이 건물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1988년 관광안내센터로 개보수 되어 오늘날 관광객들이



찾아와 역사적인 건물을 둘러봄과 동시에 말레이시아 전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통 민속공연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시사점

삼량문화축전에서 가야진용신제를 관람하면서 김일권시장께서 용신제 지내는 시간을 축약하여 상시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사전예약을 받아 가야진사에서 용신제가 상시 열릴 수 있도록 한다면 양산의 새로운 관광상품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양산시의 관광도시를 위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 행정 중심 복합도시 푸트라자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행정수도 건설의 롤 모델이었던 푸트라자야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인구·정치·경제 등이 밀집되어 있어 과밀화 및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당시 총리였던 마하티르 총리의 주도로 1995년 8월부터 행정수도 건설을 시작하였다. 도시 전체를 단위개발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그 단위를 20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 5개의 구역은 중심부 지역에 두고 있으며 14개 구역은 주거지역에 배치하며 나머지 한 곳은 습지에 두고 있는데, 5개의 중심부 지역은 아래와 같이 계획 조성 되었다.

※ 중심부 지역

1구역(정부구역)	수상청 등 정부청사, 푸트라사원, 트라광장
2구역(복합개발구역)	경제부처 정부청사, 상업시설, 주거단지
3구역(공공, 문화구역)	사법부 청사, 건설청, 공공문화시설
4구역(상업구역)	녹지45%, 밀상업시설, 주거단지
5구역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구역)	컨벤션센터, 주제공원, 교육기관

▶ 시사점

우리 시의 경우, 인구성장을 위하여 주거지역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각종 공공 인프라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도시계획 수립 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나 향후 사정변경에 따른 공공시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의 구상이 필요함을 생각해본다.

2. 싱가포르

·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은 1974년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어, 1,000여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을 통해 싱가포르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시사점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는 URA라는 일관된 행정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함.

글로벌 도시국가로 성장한 싱가포르의 역사와 배경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비전으로 두고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뉴워터 비저터 센터(New Water Visitor Center)

싱가포르는 만성적인 물부족 국가로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물 자원 확보 방안을 연구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인 PUB(Public Utilities Board)를 통해 빗물 확보(20%),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40%), 하수처리수 재이용(30%), 해수담수화(10%) 등 4가지 전략을 마련하여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베독 뉴워터 팩토리 비저터 센터(Bedok NEWater Factory Visitor Center)’는 빗물확보를 위한 하수터널과 하수처리수를 뉴워터(한 번 쓰고 버린 오폐수를 정화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든 물)로 만드는 직접 체험하고 홍보하는 시설이다.

▶ 시사점

우리 시는 정수장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확보하고 하수처리장에 공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레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과 하수 슬러지의 최소화 및 재에너지 화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물 확보 자체가 곧 생존 전략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 BO TIEN(노인복지시설)

보 티엔은 종교시설(도교)이 노인복지시설로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전액 기부를 통해 운영하는 자발적 자조적 단체이다.

▶ 시사점

자연스러운 일상의 기부문화가 잘 정착되어서 부족하지 않은 물질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내의 사회복지시설임을 느꼈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않은 시설이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에 자발적, 자립적 운영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공무국외여행 개요

- 여행 기간 : 2018. 12. 26.(수) ~ 12. 29.(토) (4일간)
- 방문 국가 : 일본(동경, 요코하마, 오사카 등)
- 목 적 : 본 여행을 통하여 해외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함양하여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방문 장소 : 메구로 구립 코마바 체육관 외 10개소

■ 주요 방문결과

1. 메구로 구립 코마바 체육관

·코마바 캠퍼스 공원 내 위치한 코마바 체육관은 배구, 배드민턴, 풋살,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체육실을 비롯해 온수 수영장, 피트니스 룸, 테니스 코트 등 각종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스포츠, 레크리에이션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각 종목에 지도원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시사점

우리나라는 개월 단위로 회원등록을 하고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반면, 코마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개월 단위로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지만 자동판매기를 통해 2시간 이용권을 판매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좋은 점 인 것 같고 우리도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이와타니 수소스테이션

· 일본의 산업가스기업으로 1930년 창업해 다양한 가스 및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1941년부터 수소를 궁극적인 청정에너지로 파악해 수소에너지의 보급을 향한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살기 좋은 지구가 이와타니의 소원입니다"를 기업 슬로건으로 내걸고 수소의 활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환경 문제라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투입 자원, 에너지 양과 폐기물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과 물 이용의 저감에 노력하고 사업 활동에서 환경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기후 변화와 공해 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 시사점

우리나라도 전기차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수소차 개발 및



구매 지원을 확대, 세금감면, 무엇보다 중요한 스테이션 인 프라 구축 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주요국도 강화된 환경규제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는 중이라 보다 더 좋은 수소차 기술을 축적한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요코하마 장애인 문화센터

·요코하마 장애인 스포츠 문화센터는 1992년 8월 28일에 개관하였고 장애인이 스포츠,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사회 참가의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핵심 시설로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과의 교류를 활발히 수행 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요코하마 장애인 스포츠 문화센터는 장애인 스포츠 ·레

크리에이션 진흥의 핵심 시설, 재활 스포츠의 핵심 시설, 건강 만들기 거점, 장애인의 문화 · 정보 활동의 핵심 시설, 시민 상호의 교류 촉진의 거점, 장애인 자신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체육시설을 흔하게 찾아보기 힘들데 이번에 방문한 요코하마 장애인체육센터는 27여년전부터 설립이 되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체육관을 만들고 지원한다는 것이 현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는 부러움이 될 만한 것들이다.



벤치마킹

■ 안보·통일교육 벤치마킹

- 기간 : 2018. 11. 07.(수) ~ 09.(금)
- 장소 :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양구
- 내용
 - 파주 :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1일차)
 - 철원 : 제2땅굴,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백마고지, 고석정, 화산강(2일차)
 - 양구 : 제4땅굴, 을지전망대, 편지봉(3일차)
- 목 적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함양하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과 장소를 방문하여 안보·통일교육 벤치마킹을 시행하고자 함.

1. 제3땅굴

제3땅굴은 1974년 9월 5일 귀순한 북한의 김부성씨에 의해 땅굴공사 첩보를 근거로 1975년부터 문산 지역에 대한 시추작업을 하였으나 땅굴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다가 1978년 6월 10일 시추공 중 1개가 폭발함으로써 역갱도 굴착 공

사를 실시, 1978년 10월 17일 적갱도에 관통하여 판문점 남방 4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 땅굴은 폭 2m, 높이 2m, 총길이는 1,635m에 달하고, 1시간당 3만명의 병력이동이 가능한 규모이며 그 위치가 서울에서 불과 52km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는 제2땅굴과 비슷하나 서울로 침투하는데 있어서는 제1.2땅굴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임진각에서 서북쪽으로 4km, 통일촌 민가에서 3.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서울에서 승용차로 4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2. 도라전망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다. 송악산

OP(Observation Post; 관측소)가 폐쇄된 후 1986년 사업비 약 3억 원을 들여 국방부가 설치한 통일안보관광지이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은 1987년 1월부터이다. 건물총면적은 803.31m²로, 관람석(500석)·VIP실·상황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망원경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며, 그밖에 송악산·금암골(협동농장)·장단역·북한선전마을 기정동·김일성 동상 등이 바라다 보인다.

3. 제2땅굴

1975년 3월 24일 강원도 철원(鐵原) 북쪽 13km 지점인 군사분계선 남방 900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너비 2.1m, 높이 2m, 깊이 지하 50~160m, 길이 약 3.5km에 달하는 암석층 굴진 아치형 구조물이다. 전술능력은 1시간에 약 3만 명의 병력과 야포 등 중화기가 통과할 수 있다.

4. 평화전망대

평화 전망대는 인근의 철의 삼각전망대 앞으로 나무들이 우거지면서 제 기능을 잃어 2007년 준공되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제2땅굴과 군 막사, 검문소를 재현한 전시물과 비무장지대 사진 등이 갖춰져 있으며, 50인승 규모

의 모노레일이 설치돼 관광객들이 쉽게 전망대에 오를 수 있다. 태봉국의 옛성터와 철원 평야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쌍안경을 통해 북한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

5. 백마고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을 북서쪽으로 약 12km 지점에 있는 해발 395m의 고지로서 군사적 관례에 따라 395고지라고도 한다. 6·25전쟁 때 국군과 중공군이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심한 포격으로 산등성이가 허영게 벗겨져서 하늘에서 내려보면 마치 백마(白馬)가 쓰러져 누운 듯한 형상을 하였으므로 ‘백마고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전투의 대승으로 휴전을 앞두고 군사적 요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유엔군은 정전회담에서 계속 유리한 입장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전투를 기념하여 백마고지 정상에 기념관과 전적비, 호국영령 충혼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해마다 10월 16일을 전승(戰勝) 기념일로 삼아 민·관·군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6. 제4땅굴

1990년 3월 3일 강원 양구(楊口) 북동쪽 26k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너비 1.7m, 높이 1.7m, 깊이 지하 145m, 길이 약 2.1km에 달하는 암석층 굴진 구조물이다.



7. 을지전망대

가칠봉(1,049m) 산등성이에 있다. 1988년에 건립한 총 면적 324㎡, 높이 10m의 2층 건물이다.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전망대로 군사분계선 남쪽 1km 지점에 있다. 북쪽으로 북한군 초소와 논밭이 보이고, 맑은 날에는 금강산 비로봉·차일봉·월출봉·미륵봉·일출봉까지 보인다. 6·25전쟁 때의 격전지였던 편치볼도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 전망대가 서 있는 자리 또한 당시에는 치열한 격전지였다. 처음에는 군부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단체 관광객들만 출입할 수 있었으나 1998년부터 개인 관광객의 출입이 허용되었다. 단, 근처의 양구통일관에서 출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총 평

이번 벤치마킹은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철원군, 양구군의 안보·통일관련 장소를 방문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함양하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안보·통일관련 장소를 직접 찾아 보니 분단의 현실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고 우리의 숙명인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새롭게 되새기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한반도 남쪽의 끝에서 북쪽의 끝까지 차량 이동 시간이 많아 쫓기듯 일정을 소화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오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번 벤치 벤치마킹을 실시함으로써 양산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간 소통의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 양산 열병합발전소 건립 관련 벤치마킹

- 기 간 : 2018. 11. 02.(금) 07:00 ~ 21:30
- 장 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판교지사
- 내 용
 - 화성지사 운영현황 청취
 - 화성지사 및 양산지사 시설현황

- 열병합발전 안전(환경)관리 현황

○ 화성지사 열병합발전시설 견학

- 전기생산시설 : 가스터빈발전기, 증기터빈발전기
- 열생산시설 : 배열회수보일러, 침두부하보일러
- 열저장/수송시설 : 축열조
- 중앙제어실

○ 판교지사 통합운영센터 운영현황 청취

○ 주거지 인근 열병합발전소 운영 및 연계사업장 열공급 사례 청취

· 목 적 :

- 양산 집단에너지시설(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에 건립 예정인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과 환경성 평가를 위한 유사시설 운영 현황 확인
- 수도권외의 주거지역 인근 열병합발전소 운영 사례 및 소규모 택지에 별도의 열원 설치 없이 운영 중인 연계사업장 열공급 사례 확인





2018 하반기 양산시의원 교육

- 일 정 : 18.8.27.(월) / 18.11.14.(수) (2회)
- 장 소 : 3층 특별위원회실
- 내 용 : 9월 및 12월 정례회 전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 기법 등 교육
- 대 상 : 양산시의원 17명
- 방 법 : 외부강사 초청 후 자체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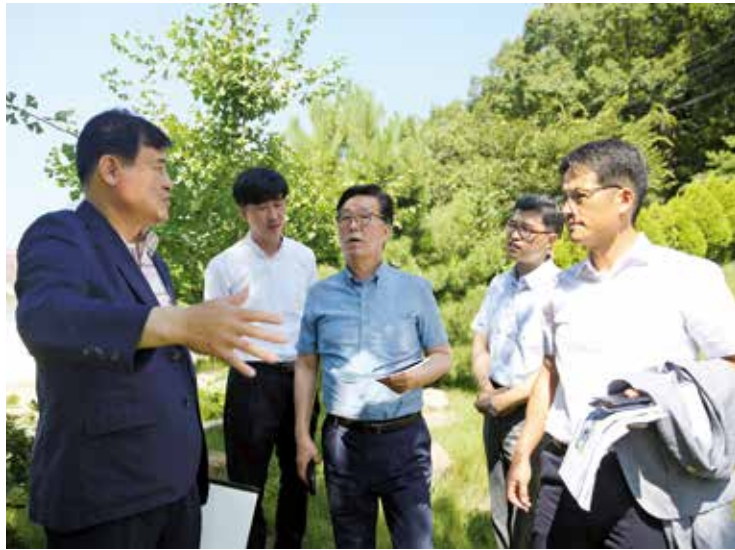


의정활동 이모저모

1		6	
2		7	8
3		9	10
4	5		

1. 제2회 BEST양산교육 진로진학 박람회
2. 157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3. 157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4. 1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5. 교육공감 간담회
6. 어린이의회 입교식
7. 현장활동
8.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
9.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활동
10. 양성평등공감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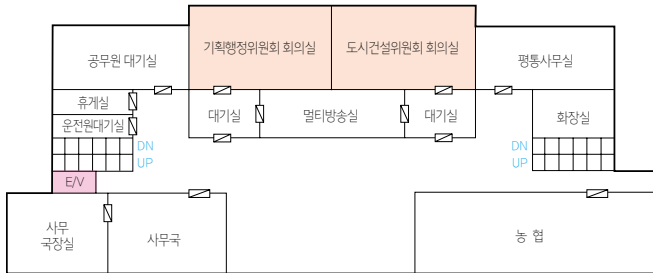


의정활동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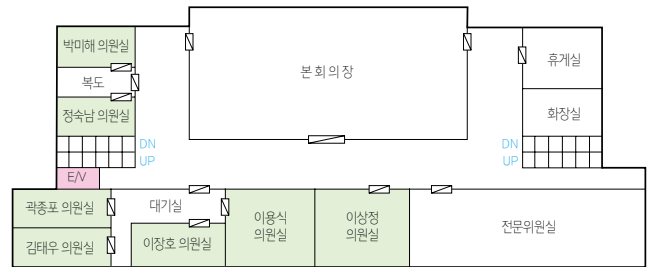
1		6	
		7	
2	3	8	
4	5	9	10

1. 양산시 육아박람회
2. 아이스버킷챌린지
3. 삼량문화축전
4. 2018 양산국화향연 개장식
5. 2018 양산 주민복지·자원봉사 박람회
6. 2018 양산맛집 향토음식 경연대회
7.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8.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
9. 제야의 종 타종식
10. 2019 시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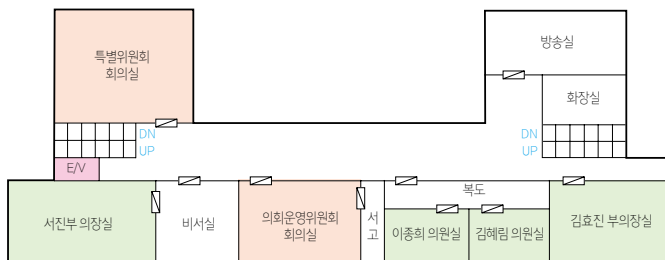




1층



2층



3층



4층



서진부 의장 392-8500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위원장 392-8547

이상정 의원 392-8565

김태우 의원 392-8545

이장호 의원 392-8553

사무국장 392-8600

의회운영전문위원 392-8650,8652~3

의장부속실 392-8503~4

기획행정위원장 정석자 위원장 392-8530

이종희 의원 392-8557

최선호 의원 392-8563

김혜림 의원 392-8555

의정팀 392-8611~6

기획행정전문위원 392-8660,8662~4

이용식 의원 392-8551

곽종포 의원 392-8549

박미해 의원 392-8561

의사팀 392-8621~5

김효진 부의장 392-8510

도시건설위원장 임정섭 위원장 392-8540

문신우 의원 392-8520

박재우 의원 392-8543

정숙남 의원 392-8559

FAX 392-8619

도시건설전문위원 392-8670,8672~3 FAX 392-8679



열린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합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생방송 시청 안내

양산시의회 회의를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회의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에게 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www.yscouncil.go.kr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 주소로 접속하시면
모바일 생중계 시청도 가능합니다.



소통하는 열린의정!
역동적인 희망의회!



양산시의회
YANGSANCITYCOUNCIL

<http://www.yscouncil.go.kr>
(우)50624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TEL. 055)392-8611~6 FAX. 055)392-8619